

제3회
충청다문화포럼

다문화가족의 현실 진단

-한국형 다문화가족 적용법률 및 정책-

- 일시 - 2011. 11. 30(수) 14:00~17:30
- 장소 - 우송대학교 우송관 5층 대회의실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Korea Policy Institute of Multiculture Family

다문화가족의 현실 진단

– 한국형 다문화가족 적용법률 및 정책 –

인 사 말

다문화가족의 문제와 애로를 현장 중심의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찾아내고 해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다문화가족에 관심을 갖는 대학 및 공익재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대하여 다문화가족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봉사 기관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 11월에 창립된 저희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은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거듭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등대를 표방한 소식지 “함께가요 Together”가 2011년 가을호가 발간되었고, 연구원 홈페이지가 명실공히 다문화의 광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다문화여성을 위한 다문화뷰티교실과 다문화여성 수기 공모대회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과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성원이자 향후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가 될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순조롭게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소통채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다문화와 관련된 학계,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포럼위원을 위촉하여, 충청다문화포럼을 지난 6월 16일 발족하여 제1회 충청다문화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발족식과 함께 제1회 다문화여성 수기 공모대회를 개최하여 수상작에 대한 시상을 함께 하였습니다.

제1회 충청다문화포럼의 대주제는 “다문화가족의 현실 진단—언어교육과 다문화 이해를 중심으로”였으며, 발표주제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체계의 해결과제와 극복 방안”, “다문화이해대처능력과 한국사회”, “다문화와 관련된 청각 및 언어치료 사례 보고”였으며, 제2회 대주제는 “다문화가족의 현실진단—사회적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이며 발표주제는,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법적 과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제도적 지원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가정 유아의 탈북과정 경험 및 지원방안”,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으로서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으며 포럼자료집은 다문화가족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뜨거운 호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총3회의 충청다문화포럼이 예정되어있는데, 제3회 충청다문화포럼의 대주제는 “다문화가정의 현실진단—한국형 다문화가족 적용법률 및 정책”으로 발표주제는 “이혼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자격”,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현황과 과제”, “국제결혼 이주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안”으로서 우리 다문화가족의 현실에서 최근 이슈로 등장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현실진단과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다문화여성 수기공모 대회 시상식 및 한국 정부의 ODA로 설립되고 우송대학교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와의 업무협력양해각서(MOU)체결식도 함께 함으로써 이번 충청다문화포럼 행사는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여러 기관의 후원 협찬이 저희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과 충청다문화포럼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및 봉사활동으로 이어져 다문화가족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다문화포럼 행사에서 귀한 발표를 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과 충청다문화포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충청다문화포럼에 참여하신 포럼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30.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
충청다문화포럼 대표 조원권

진행순서(Program)


시 간	내 용
14:00 ~ 14:20	<p>개회식 인사말 연구원 홍보영상</p> <p style="text-align: right;">변평섭 이사장</p>
14:20 ~ 14:50	<p>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MOU 체결식 및 기초연설 MOU 체결식 기초연설</p> <p style="text-align: right;">캄파이시사반 총장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p>
14:50 ~ 15:30	제2회 다문화여성 수기공모대회 시상식
15:30 ~ 15:50	Break Time
14:10 ~ 15:30	<p>제3회 충청다문화포럼 좌장 : 조원권 원장 다문화뷰티교실 소개</p> <p style="text-align: right;">김혜균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p>
	<p>주제발표 이혼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자격</p> <p style="text-align: right;">박홍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현황과 과제 : 결혼이주가족을 중심으로</p> <p style="text-align: right;">류한수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교수 한혜빈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국제결혼 이주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방안</p> <p style="text-align: right;">조원권 우송대학교 학사부총장</p>
	자유토론
17:00	폐 회
18:00 ~ 20:00	만찬—솔파인레스토랑(파인홀)


좌장 및 발표자 소개


□ 좌장

	우송대학교 학사부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 · 경제학박사 · 고용허가제의 본격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효율화 방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2007) · 베트남 ICT 대학 설립을 위한 교육모형 수립에 관한 연구(2009) · 대학·연구소·개도국 진출 우리기업 간 연계 과학기술협력(R&D 및 HRD) 모델(2010) 외 다수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표창, 캄보디아, 라오스 정부훈장 표창 외 다수
조원권	

□ 발표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법학박사 · 중국 북경대학 법학원 방문학자(1992~2000) · 대한민국 국회 파견검사(2002~2004) ·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2005~2007)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부장검사 2008) · 중국에서의 강제수사와 인권보장 제도 연구
박홍식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학박사 ·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위원회 위원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 자문위원 · 한국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관련 스트레스와 정신적 건강의 관계(2011) · 미래형 한국사회복지정책 개발연구(2011) · 충남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실태 및 가족지원 정책개발(2010) ·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2009) 외 다수
류한수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박사 · 부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2009~2011) · 국무총리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 경기도 여성직업 훈련체계와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1999) ·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발전방안 연구(2001) · 가족지원기본법입법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2004) 외 다수 · 교육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 도지사 표창 등
한혜빈	

목 차(Contents)

“다문화가족의 현실 진단 - 한국형 다문화가족 적용법률 및 정책”

좌장 조원권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 / 우송대학교 학사부총장

□ 발표

-
- | | |
|---|----|
| 1. 이혼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자격
박흥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5 |
|---|----|
-
- | | |
|--|----|
| 2.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현황과 과제: 결혼이주가족을 중심으로
류한수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교수
한혜빈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51 |
|--|----|
-
- | | |
|---|----|
| 3. 국제결혼이주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방안
조원권 우송대학교 학사부총장 | 95 |
|---|----|

The image features a minimalist, abstract design on a white background. It consists of several overlapping, semi-transparent gray shapes. A large circle is the central focus, with a thick gray line passing through its center. Another circle overlaps the top-right portion of the first, and a third circle overlaps the bottom-left. Additionally, a thick gray line enters from the bottom-left and extends towards the center, crossing the large circle. The overall composition is clean and modern.

플
표

이혼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자격

박홍식_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혼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자격

박홍식(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 I. 다문화가족의 개념
- II. 다문화가족 해체의 문제
- III.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문제
- IV. 결론 및 정책건의

I. 다문화가족의 개념

1. 다문화가족 의미의 다양성

다문화가족의 의미에 대하여는 현재 그 사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개념과 범위가 일정하지 않다. 때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하기도 하고¹⁾,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새터민이 포함된 이주민가정을 포함하는 한가족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하며,²⁾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 새터민, 그 밖에 외국인거주자,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의미한다고 하거나,³⁾ 혼혈인 가족을 다문화가족

1) 최정혜, 다문화가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 경남일보, 2009. 12. 8.

2) 송미경,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1쪽

으로 정의하기도 한다.⁴⁾ 이는 출입국이나 국적취득과 같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는 다문화가족의 의미와 교육 및 인권과 같은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는 다문화가족의 의미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개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미가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어 질수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 의미에서의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기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개정 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개정 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법률상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였고, 「국적법」 제3조의 인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인지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귀화허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역시 인지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귀화허가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다문화가족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었다.

3) 김범수, 서은주, 손병돈, 정재훈, 조석연, 최현미, 신승연 최승희 공저,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5. 31. 제63쪽

4)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다문화가정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2006. 86쪽

그러나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⁵⁾은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물론,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간의 결혼이나, 귀화허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모두 다문화가족에 포함하게 되었다.

즉 「국적법」 제2조에 의하여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출생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포함된 모든 가족이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3. 결혼이민자의 개념과 다문화가족

가. 결혼이민자의 개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는 결혼이민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과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에 대하여는 2011. 4.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관련조항이 개정되어 2011. 10. 5. 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혼인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사실이 있지만 현재는 혼인관계가 해소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결혼이민자에 해당한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혼인을 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가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결혼이민자를 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장소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이어야 하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주거를 두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결혼이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다.

나.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과의 재혼 문제

개정 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다문화가족에 해당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다. 결혼이민자는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한외국인을 의미하므로 국적을 취득하면 이미 한국인이 되어 외국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결혼이민자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개정 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외국인과의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성질상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 정의는 적절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당시 제안이유도 ‘국제결혼이나 국가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단일민족 의식에 의하여 생활 전반에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⁶⁾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 가족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였다.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든 가족으로 확대한 것은 적절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6)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 중 대안의 제안경위, 2008. 2. 19.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131&PROM_NO=08937&PROM_DT=20080321, (검색일 : 2011.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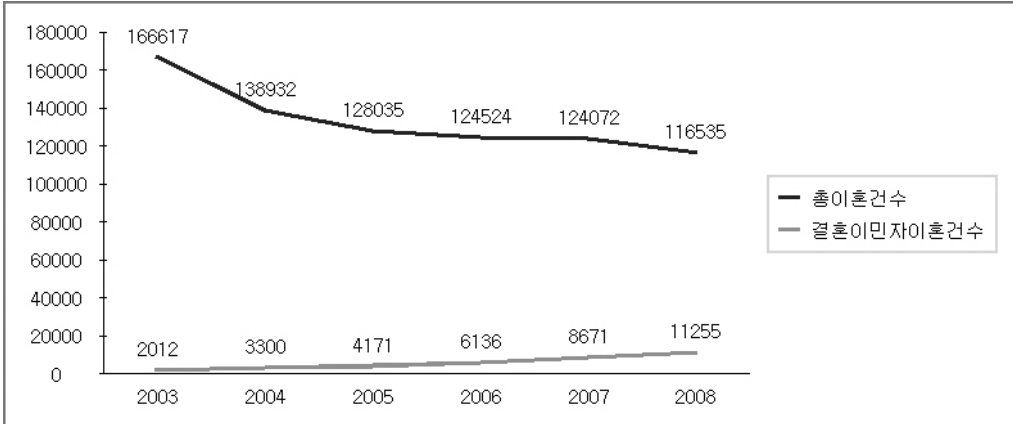
II. 다문화가족 해체의 문제

1.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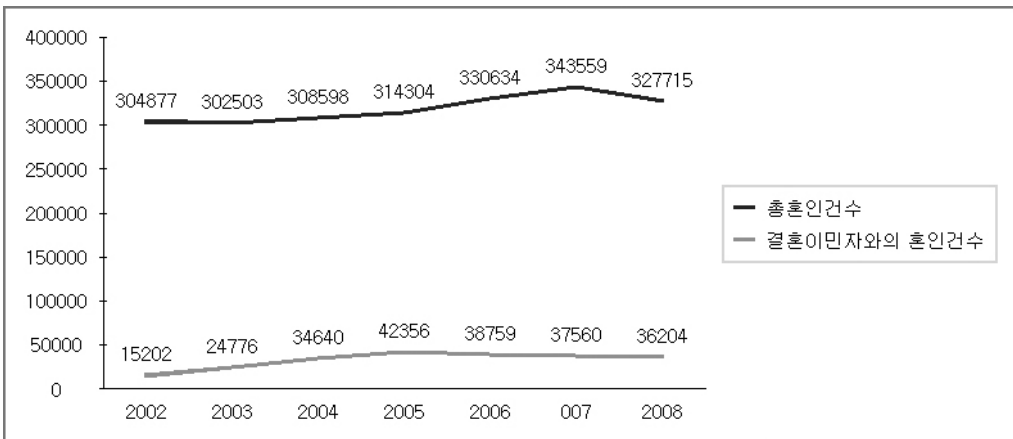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은 그 가족구성원들 간의 언어와 문화 및 경제생활 등의 차이로 인하여 비(非)다문화가족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한 결혼이민자 본인 및 구성원들의 노력과 협조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혼 등에 의하여 다문화가족이 해체되는 경우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과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복잡한 문제가 현실화 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확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 이혼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이혼건수는 오히려 점차 증가하여 그 비율이 2002년과 2003년에는 각 1.2%를, 204년에는 2.4%, 2005년 3.3%, 2006년 4.9%, 2007년 7.0%, 2008년에는 9.7%에 이르러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전체 결혼 건수 중에서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에는 5.0%였으나, 2003년 8.2%, 2004년 11.2%, 2005년 13.5%, 2006년 11.75%, 2007년 10.9%, 2008년 11.0% 등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약 11% 정도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온 반면, 이혼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이혼을 증가는 한국인 가족과 분리되어 가족의 보호 밖에 놓이게 되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결혼이민자들은 인권문제, 사회적 처우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과 같은 법률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다문화가족 해체의 원인

다문화가족해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경제적 갈등이나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결혼조건의 속임 등이 비교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⁷⁾

다문화가족의 해체원인이 되는 이러한 부당한 대우라고 느끼는 이유 뿐 아니라, 경제적 갈등이나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결혼조건의 속임과 같은 이유는 결혼 당시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보니, 신뢰가 없는 결혼생활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따라서 결혼당시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자 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8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아내가 이혼상담을 한 전체 건수 1,020건중 531건(52.0%)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꼽았으며, 그 밖에 경제갈등이 89건(26.1%),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70건(20.5%), 가족간 갈등 50건(14.7%), 결혼조건 속임 17건(5.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연구 ; http://lawhome.or.kr/law1/sub07/detail.asp?board_no=225&board_seq=0&board_code=2&searchtype=&searchword=&page=1

8) 광배희, 다문화가정해체 원인 분석, 농민신문, 2011. 7. 1.

간 현실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이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방지하는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혼중개업제도의 보완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제도 현황
현재 다문화가족 구성의 대부분은 국제결혼중개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⁹⁾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의한 국제결혼은 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¹⁰⁾

국제결혼중개업이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동법률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적으로 신고로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결혼중개업에 비하여 그 설립을 다소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등록사항이며, 일정한 교육을 받기만 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받

9) 김영주, 앞의책, 제26쪽 참조

10) 실제로 정신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신부를 한국인 남편이 8일 만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상풍 취급되는 여성들 부끄러운 국제결혼 실태, 2010. 7. 16.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16/2010071601470.html

아야 하는 교육도 결혼중개업제도에 대한 강의 1시간,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 권보호에 관한 강의 1시간, 결혼중개업관련 소비자 보호방안 강의 1시간, 상담실무 강 의 또는 실습 1시간으로서 모두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결혼중개업의 관리 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시간(별표 3) 참조) 사실상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나마 교육내용도 국제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 결혼중개업제도 및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에 관한 결혼중개업의 일반에 대한 강의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의한 경우 국제결혼중개 업제도는 필연적으로 자격미달의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제결 혼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이윤추구를 위한 편법 국제결혼알선이 만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 국제결혼중개업 제도의 보완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제도의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국회에서는 최근 「결혼중개 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다수 심의 중에 있다.¹¹⁾

동법의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감독을 강화 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하거나,¹²⁾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이용자가 결혼상

11) 2008. 12. 31. 부터 2011. 3. 23. 까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모두 16건에 이른다. 이중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박민식 의원이 개정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5건은 모두 결혼중개업자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들이다.

12) 최병국 의원 대표발의

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거나,¹³⁾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내용에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의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그러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보존하거나,¹⁴⁾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국가의 공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¹⁵⁾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한 후 공증하게 하는 방안,¹⁶⁾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신상정보의 제공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교부받도록 하는 한편, 허위로 제출되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¹⁷⁾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¹⁸⁾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¹⁹⁾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²⁰⁾ 인권침해적 결혼중개행위를 처벌하는 방안²¹⁾ 등이 그것이다.

위 개정법률안들은 2010년 발생한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출신 신부를 한국인 남편이 결혼 후 8일 만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서 신상정보의 제공 및 결혼중개업의 엄격한 관리를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13) 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14)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15)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16)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17)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18) 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19)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1)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모두 국제결혼중개업 제도의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국제결혼중개에 있어서 정보제공의 문제

국제결혼중개제도와 관련하여 국제결혼 대상자 상호간에 있어 신상정보의 정확한 제공이 국제결혼에 의한 혼인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여진다.

결혼대상자의 사회적 위치, 경제적 능력, 정신병력, 형사처벌 경력, 가족관계 등이 정확하게 제공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립된 결혼은 쉽게 파탄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파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개인의 판단문제에 귀착하게 되는 것일 뿐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핵심문제는 결혼대상자들에 대한 상호간 정확한 신상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2조 제2항에서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후 동법 제26조 제2항 제5호 벌칙 조항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10조의 2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로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여부를 포함), 직업, 성폭력 가정보록 아동학대 등 관련범죄경력,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결혼중개업자는 단순히 상대방으로부터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족하며, 그것이 진실 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서류가 허위의 서류라 하더라도 이를 알면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결혼중개업자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무가 없는 결혼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서류의 진정성을 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혼인의 성사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국제결혼 대상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알 수 없게 되어 혼인이 파탄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국제결혼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를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영농사실확인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에 한정된 범죄경력조회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신상을 알 수 있는 상당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이란 국내결혼과 달리 언어와 관습, 문화, 경제수준 등이 상이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상대방 국가의 이미지에 의하여 개인의 환경에 대한 오인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제도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관련 확인의무와 확인사항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자격요건과 신상정보 확인 의

무를 강화함으로써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의 폐단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다문화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의 문제

다문화가족의 해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해체의 원인 중 하나가 비정상적인 다문화가족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다문화가족의 구성의 원인에는 위장결혼의 문제와 사기결혼의 문제가 있다.

위장결혼이든, 사기결혼이든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목적일 뿐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더 이상 한국인 남편과의 혼인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곧 이혼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 해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 위장결혼의 의미

일반적으로 위장결혼이란 외국인이 국내 취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인천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혼 남성인 김모씨는 2002년 국내 위장 국제결혼 브로커와 결탁하여 중국인 남편이 있는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중국인 여성 오모씨를 소개받게 되었다. 한편 중국인 오모씨는 중국의 위장결혼 브로커에게 중국돈 4만위엔(한화 약600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중국내에서 김씨와의 위장결혼 수속을 하였으며, 중국을 방문한 김씨는 오씨와 만나 결혼 심사에 필요한 형식적인 합동사진을

찍고, 민박집에서 2~3일 정도 혼자 투숙한 뒤 귀국하였고, 이후 오모씨는 한국행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였다. 김모씨는 오모씨와의 위장결혼 성사대가로 한국 브로커에게 한화 400만원을 받았으며, 나중에 오모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다시 400만원을 더 받기로 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위장결혼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²⁾

이는 한국인 김모씨와 중국인 오모씨가²³⁾ 위장결혼을 하기 위하여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나 그 공전자기록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장결혼행위는 당사자인 두 사람은 물론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도 모두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되게 된다.²⁴⁾

위장결혼은 혼인신고를 하는 당사자 모두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기간동안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는 계약결혼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사기결혼의 의미

당사자 사이에 정상적인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만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는 위장결혼과는 달리, 일방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으나 다른 일방은 이러한 진정한 혼

22) 한 중 국제결혼 위장, 사기결혼, 불법알선등 피해사례, 원문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인용; <http://blog.daninison.net/daninison/1206189> 2006. 3. 27)

23) 위장결혼의 많은 부분은 중국의 조선족 및 한족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단속한 자료의 분석 등에 의하여 위장결혼의 95%는 여성이며, 국적별로는 85%가 중국국적이라고 한다. 헬스메디, 급증하는 외국인 불법 위장결혼 실태 고발 2007. 11. 1. ; <http://www.healthmedi.net/news/articlePrint.html?idxno=8433>

24) 혼인의 진정한 의사는 없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신고행위에 대하여 이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에 해당할 것인가가 문제로 되었으나 판례는 일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인의 의사 없이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혼인신고를 하는 사기 결혼의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던 중국인 여성 이모씨는(조선족) 2001년 중국인 남편인 김모씨와 합의하여 실질적인 이혼의사 없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이혼 수속을 밟은 다음, 한국인 남성 정모씨와 국제결혼을 하였으며, 이씨는 한국에 입국한 후 정모씨와 일정기간 동거를 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국적취득 후 이모씨는 한국인 남편 정모씨에게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이혼을 요구하여 결국 이혼에 이르렀고, 한국인으로서 이혼녀가 된 이모씨는 중국에 있던 원래 남편 김모씨와 다시 국제결혼을 추진함으로써 김씨의 한국 입국 및 한국 국적 취득을 도모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가장 전형적인 사기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다. 위장결혼 및 사기결혼과 다문화가족의 해체

1) 처벌의 강화

결혼이민자가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다문화가족으로 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이와 같이 형식상 다문화가족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은 그 구성당시부터 해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25) 다만 사기결혼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위장한 당사자가 일정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어야 하며, 보통은 결혼 과정에서 위장 당사자본인이나 또는 한 가족 등에게 생활비나 지참금 등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생활과정에서 생활비 등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은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이 구성되기 이전에 국제결혼중개업자나 브로커들의 개입을 차단하여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혼인과 관련된 서류의 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며, 그 가담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 귀화허가 취소의 문제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이라 하더라도, 외견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국적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결혼이민자는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귀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귀화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결혼이민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결국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어, 체류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미 귀화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이러한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임이 밝혀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위장결혼 등에 의하여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적법」 제21조는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²⁶⁾ 「국적법」시행령 제27조는 혼인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그 밖에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6) 동 규정은 2008년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 이전에는 국적보유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적업무 처리예규에 근거해 귀화결정을 취소하여 왔으나, 국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외교문제로 비화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허가받은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으로 인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강제적으로 국적 취소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국적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에 의하여 국적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²⁷⁾

한편 「국적법」은 혼인을 이유로 한 귀화허가자에 대하여 그 혼인의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귀화허가의 취소는 신고된 내용의 허위에 의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동 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사실상 귀화허가를 받은 후 7년 이내에만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비록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에 의한 경우에는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장결혼자나 사기결혼자에 대하여는 온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엄정하게 귀화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일단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면 면죄부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돈벌이를 위한 국제결혼과 이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성립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하고 정상적인 다문화가족의 구성이 되도록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27) 법무부의 비공식적 확인에 의하면 2008년 「국적법」 제21조가 시행된 이후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에 의하여 귀화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2010년 9. 7. 귀화허가가 취소된 단 1건이라고 한다.

III.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문제

1.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가.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는 경우인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그리고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 있다.

결혼이민자에 있어서 국적의 취득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적취득은 다문화가정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귀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적법은 제5조에서 일반귀화 요건으로 우리 민법상 성인인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국어능력과 생계유지 능력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5년 이상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국적법」상 일반귀화요건을 완화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

28) 김경신, 다문화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 분석, 2009. 6. 11. 광주광역시 다문화정책토론, 제35쪽

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었던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이귀화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즉,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2년간 외국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나, 결혼하여 2년간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결혼하여 이미 3년이 경과하였고, 그 중 1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경우 최단 2년의 거주로 국적취득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귀화와는 달리 비교적 단기간에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1) 「국적법」 규정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혼이민자가 그러한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기 이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이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국적법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하여만 간이귀화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결혼이민자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사유발생 당시에는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그 이후에 잔여기간을 채우면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이귀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살던 중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라도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2년이 경과한 경우나, 혹은 한국인 배우자 사망 후 계속하여 1년간 한국에 거주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간이귀화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적법은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뿐 아니라,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간이귀화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국적법에서 예외적으로 간이귀화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가가 문제로 된다.

사실상 별거상태와 같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 있는 자, 또는 제2호의 배우자와 혼인한 자에 해당되어 간이귀화의 요건이 충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란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동법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란 법률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³⁰⁾ 동 규정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의미

가) 의의

국적법 제6조 제2항 3호의 의미를 결혼이민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라고 이해하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라는 부분과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법 제6조 제2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라고 규정하여 외국인이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에 간이귀화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서,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 사망과 실종에 의한 혼인해소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라

29) 다만, 귀화의 일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동거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경우 등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귀화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는 간이귀화의 일반요건이 구비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30) 법무부도 사망, 실종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혼인의 종료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부 국적제도 개관, 2010. 3 : <https://www.midri.kr:50002/include/download.php?file=public/...> 2011. 8. 3. 방문

는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민법 제775조 제2항이 생존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법상 상속규정 등에서도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규정 등에서 생존배우자는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므로,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도 여전히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이혼에 의한 혼인해소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사망이나 실종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규정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동조는 결혼이민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에 있어서는 “이혼 당시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 규정을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결혼이민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의 규정을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한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적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뿐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 당시에는 비록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동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이귀화 요건을 만족시키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혼인 후 계속하

여 2년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경우 비록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결혼이민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을 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비로소 귀화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³¹⁾

2.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가. 의의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에도 대한민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 이혼 이후에도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 또는 체류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국적법」과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규정되는 문제이다.

결혼이민자가 이혼 이후 귀화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적법」상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2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나,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결혼이민자에게 그와 같이 2년 또는 5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

31) 실제로 한국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간이귀화 요건이 충족되기 이전에 이혼당한 베트남 여성에 대하여 법무부는 이혼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으며 (한겨레신문 2007. 7. 17. “씨받이 신부 고소장 베트남 사회 부글부글” 참조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222950.html>, 2011. 8. 5. 방문), 이에 따라 동인이 법무부에 귀화신청을 한 바 있다. (한겨레신문 2010. 7. 2. 자 “현대판 씨받이 베트남 신부 항소심229승소” 참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8552.html : 2011. 8. 5. 방문)

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므로, 결혼이민자도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연히 「국적법」상 외국인에 해당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이 필요하며³²⁾ 해당 사증에 따른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³³⁾

원칙적으로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의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즉 동법 시행령은 “거주(F-2)”의 체류자격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는 동 시행령 중 “가.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 해당되어 “거주(F-2)” 체류자격자로 인정되게 된다.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국민의 배우자”로서 체류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다.³⁴⁾

나.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거주(F-2)”의 체류자격이 계속하여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1)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먼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경우에도 국민 등의 배우자로서

32) 「출입국관리법」 제7조는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

33)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

34) 이순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0. 31. 29쪽 참조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F-2)”의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동 시행령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민법은 제775조 제1항에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조 제2항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여,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인척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지 아니하고, 재혼한 때에 한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동조는 인척과는 달리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여전히 배우자의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⁵⁾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결혼이민자가 재혼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한 배우자의 배우자로서 신분을 유지한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거주(F-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당연히 “거주(F-2)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결혼이

35) 민법 제767조는 친족의 정의를 배우자, 혈족 및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민법 제775조에서 말하는 인척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인척관계는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인척관계는 배우자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예컨대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여 이미 사망한 일방배우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민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 계속하여 거주지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봉양이나 자녀양육과 같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³⁶⁾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배우자의 사망과 실종에 대한 민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불허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F-2)”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2)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F-2)”의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 아니라 이혼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이러한 “거주(F-2)”의 체류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결혼이민자는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결혼이민자는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F-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체류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즉 한국인과 혼인하여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내에 입국한 결혼이민자가 이혼에 의하

36)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에 따른 체류자격”, 2011. 6. 15. 참조 : <http://oneclick.law.go.kr/CSM/OvCnpRetrieveP.laf?csmSeq=47&ccfNo=2&cciNo=1&cnpClsNo=2>, 2011. 7. 21. 방문

여 국민의 배우자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는 국내에 체류할 자격이 없게 된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23조는 입국 후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여야 하므로, 결혼이민자가 이혼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만일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7호에 의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국적법」은 국적의 취득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에도, 결혼이민자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간이귀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출입국관리법」은 이혼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책임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체류자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주소로 두고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동 규정은 이혼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둘 수 있음을 전제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의 규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상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호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결혼이민자에게 심하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무부는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규정이 아

닌 “내부 지침”으로 귀책사유 없이 이혼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하여 “거주(F-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⁷⁾

그러나 다른 한편 이혼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이러한 지침은 국민의 배우자만을 “거주(F-2)”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출입국시행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반하는 하위의 지침을 제정한 것일 뿐 아니라, 종국적인 문제의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동 지침은 결혼이민자가 귀책사유 없이 이혼한 경우에 한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결혼이민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국내에 체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와 관련하여 첨예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유발하는 등 귀책사유를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³⁸⁾

37) 법무부는 내부지침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하이코리아 인터넷 관련 페이지에서 이러한 법무부의 내부지침을 알 수 있다. <하이코리아/외국인의 체류/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 및 방법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38) 최봉경,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2호, 2010년 6월, 제134쪽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국적법」이 간이귀화의 요건을 결혼이민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에 근거하여 법무부의 내부 지침으로 결혼이민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거주(F-2)” 체류자격의 부여하는 지침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V. 결론 및 정책건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그 범위가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법률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개정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범위와 관련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다문화가족에 포함하게 될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거나 또는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오히려 다문화가족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으로 확대한 것은 적절한 법률의 개정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관련해서는 사전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마련과 사후적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이 성립되기 이전의 사전단계에서 혼인 당사자 쌍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확인 및 이를 감독하기 위한

엄격한 제도의 마련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사전적 대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영업상 이익추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국제결혼알선업자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국제결혼은, 당사자들에 대한 조건이나 그를 둘러싼 환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당사자들도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이 이루어져 다문화가족의 구성은 출발부터 불안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국가정책은 먼저 다문화가족이 성립되기 이전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진정성과 공고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특별한 제도적 제약 없이 국제결혼알선업자에 의하여 쉽게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에 대하여 정부가 계속하여 방임의 태도를 견지하며, 다문화가족 문제를 단순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차원이나,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 이라는 낮은 차원으로 이해하며, 혼인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방임할 경우, 장래 농촌사회의 붕괴 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에도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국제결혼과 관련된 엄격한 제도의 시행이 필연적으로 국제결혼의 제한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국제결혼의 제한이 반드시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해한다거나, 문화의 다양성보호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여 국제결혼을 억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에 대하여 혼인의 자유보장과 함께 혼인과 가족제도의 계속성 보장이라는 또 다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억제하고 보다 안정적인 다문화가족의 존속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성립 이전 단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은 헌법에 정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문화의 다양성 보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국제결혼알선업체와 국제결혼을 위한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원칙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현재의 국제결혼제도를 정상화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처리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과 같은 행위에 엄정대처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귀화허가를 적극적으로 취소함으로써 이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여 다문화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다문화가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대처 뿐 아니라, 해체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사후적으로 보호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보호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는 이혼에 의하여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고, 현행 「국적법」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혼인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영구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입국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한국인과 혼인하였다는 점 등으로 자국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출입국관리법」 등 현행 법률이 이들에 대하여 명문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이혼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국내체류자격을 부여한 후 「국적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률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결혼이민자가 이혼에 의하여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거주(F-2)”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적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소정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F-2)” 체류자격 중 “가” 항을 현재의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서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단,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³⁹⁾ 및 그의 미성년 자녀”로 개정하여

39) 배우자였던 자라고만 할 경우 국민과 이혼한 후 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한 후 다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거주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고, 국적을 취득하기

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정한다면 현재 결혼이민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체류자격을 주는 법무부의 지침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배치된다는 비판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경우 한국에 취업할 목적으로 결혼을 하였다가 입국 후 곧바로 이혼하는 등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이미 본 바와 같이 사전적으로 국제결혼제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제도적 보완에 의하여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미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결혼이민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사전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되, 일단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체류는 자유롭게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논문 및 자료

- 송미경,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 김경신, 다문화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 분석, 광주광역시 다문화정책토론, 2009. 6.
- 오현선, 다문화정책 및 법안분석, 제2회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정책토론, 광주광역시, 2009.
- 차규근, 국적제도 개선 방안, 법무부, 2008
- 최정혜, 다문화가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 경남일보, 2009. 12. 8.
- 최봉경,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2호, 2010. 6.
- 헬스메디, 급증하는 외국인 불법 위장결혼 실태 고발; <http://www.healthmedi.net/news/articlePrint.html?idxno=8433> 2011. 5. 20. 최종방문
- 하이코리아/외국인의 체류/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 및 방법(<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2011. 5. 26. 최종방문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에 따른 체류자격”, 2011. 6. 15.: <http://oneclick.law.go.kr/CSM/OvCnpRetrieveP.laf?csmSeq=47&ccfNo=2&cciNo=1&cnpClsNo=2>, 2011. 7. 21. 최종방문
- 법무부, 국적제도 개관, 2010. 3:<https://www.midri.kr:50002/include/download.php?file=public/>. 2011. 8. 3. 방문
- 한겨레신문 “씨받이 신부 고소장 베트남 사회 부글부글” 2007. 7. 17. : http://www.hani.co.kr/arti_society/rights/222950.html, 2011. 8. 5. 최종방문
- 한겨레신문 2010. 7. 2. 자 “현대판 씨받이 베트남 신부 항소심229승소”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8552.html : 2011. 8. 5. 최종방문

단행본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한, 이현숙, 다문화가정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2006.
- 김범수, 서은주, 손병돈, 정재훈, 조석연, 최현미, 신승연 최승희,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 김영주,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중장기계획,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8.
- 네이션 글레이저(서종남, 최현미 역),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9.
- 박찬영, 다문화적 상호이해를 위한 인문교육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8.
- 이순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장미혜,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현황과 과제

:결혼이주가족을 중심으로

류한수_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교수

한혜빈_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현황과 과제

:결혼이주가족을 중심으로

류한수(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교수)

한혜빈(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 III. 한국의 다문화가족 현황
- IV.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 V. 다문화정책의 평가
- VI. 결론 및 제언

I. 서론

1. 문제제기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다민족·다인종사회로 이행하게 되었다. 즉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외국국적 동포 등이 증가함에 따라 민족·인종·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며 사회적 욕구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국가사회정책, 복지제도와 서비스들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점은 다민족·다인종사회가 자동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문화사회는 우리와는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가진 타인종, 타민족의 이주민에 대하여 열린 관점을 갖고 그들의 문화와 삶을 수용하고 배려하며, 무엇보다도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공존 또는 상생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정책과 제도적 개선이 아울러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바로 진입단계에 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⁴⁰⁾. 왜냐하면 다문화와 가족정책의 목표와 과제는 아직도 위기와 위험요인으로 인식될 뿐이지 적극적 대응방안으로서 사회적 기회요인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로 인한 대량실업과 빈곤화의 영향으로 이주노동이 증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가부장적 핵가족의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대거 유입·정착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특수성-가부장적 가족문화와 묵시적 사회정책요인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⁴¹⁾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한국사회는 출산율 저하와 체류 외국인의 수는 급증하는 반면에 다문화중요성

40) 장미혜(2008),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 165.

41) 장미혜 외(2008),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구축(II) 총괄보고서, 서문 연구요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의 강조로 인해 ‘한민족’은 하나이고 ‘단일민족’이며 대한민국 ‘국민’ 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⁴²⁾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다문화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예측과 통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는 2천 년대 미래 한국사회의 성공과 실패, 나아가서 존망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적 위협과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이주민 대상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이중적 양상을 보이며, 다문화정책의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저출산과 특정 산업부문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현안문제에 대한 처방책으로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구사회가 다문화사회의 이행에 따른 어려운 문제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사회에서도 곧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 문제들이 위기와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대규모의 실업과 빈곤화현상은 전 지구적인 노동이주민을 양산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여성들이 높은 교육열의 수행자이자 수혜자로서 출산과업과 돌봄 노동과업이라는 가족 내 이중혁명 —소리 없는 혁명을 도도히 수십 년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출산을 저하와 돌봄 노동의 공백이 나타났고, 이를 메우기 위한 아시아여성의 결혼이주현상이 외국노동자문제와 함께 심각하게 대두하게 된 것이다.

42) 앞글, 서문 연구요약.

그리고 아시아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촌총각의 결혼과 저출산 해소라는 이중해법으로 떠오르면서 다문화 담론과 정책의 주요 주제로 뚜렷이 부각되었다. 이것은 정부와 주 언론이 다문화주의 실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존재를 인식한 것이며 당연한 귀결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다문화가족정책에서 젠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첫째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이 모색되는 데에 한국의 가부장적 부계혈통주의가 강하게 작동하여, 이러한 부계중심의 가족정책접근은 시민단체에서조차 다른 이주자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본질적 변화와 관련된 과제로 인식하는데 영향⁴³⁾을 미쳤기 때문이다. 둘째로 젠더 관점이 배제된 가족정책은 가부장적 국가의 속성상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때에 저출산 고령화 또는 현대 가족해체문제와 사회통합, 나아가서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유교적 가부장제의 전통 하에 있는데, 그러한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가족 내 권력관계를 서열화하여 한국 내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정책의제로 대두된 새로운 다문화가족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주자와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적응과정을 원조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나아가 가족이나 자발적 공동체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받고 공적 제도의 영역

43) 김혜순(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련을 위한 전제들”,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36-71

에서 복지적인 삶을 실현하여 사회적 힘(empowering)으로 승화시킬 수 기초를 만들고자 한다.

2. 연구내용

- 1)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 한국의 다문화주의 논의와 다문화사회화의 특성 고찰
- 3) 다문화가족의 현황과악
- 4) 다문화정책의 현황 및 문제 파악
- 5) 다문화 정책을 젠더관점, 인권관점으로 평가

II.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고찰

1) 다문화주의 정의

‘다문화주의’ 개념은 다문화사회라는 전지구적 차원의 현상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국가정책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일상적 용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개념적 논의에 머물러 있어, 인구현상적 측면으로 보거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온정적 태도 등 추상적 수준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단일민족문화에 익숙한 일부 아시아에서도 저항 없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roper(1999)는 다문화주의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가 제시한 조건으로는 첫째, 인종·민족·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이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형평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한다. 서구의 많은 학자들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에 있어 현상과 이념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이라는 국가의 실천적 개입이 수반되는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Kymlicka(1995)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politics of difference)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인진(2008)은 포스트모더니즘적 탈—중심화 및 차이에 대한 인정을 본질적 요소로 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고도 정의하고 있다.

하연섭(2006a)의 연구에서 분류하고 있는 정책아이디어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도 접목이 가능해진다. 첫째, 프로그램으로서의 아이디어는 국민통합적 수단으로 분류되고, 패러다임으로서의 아이디어는 인정의 정치를 기반하는 이데올로기 차원의 다문화주의로, 마지막으로 공공의 정서로서의 아이디어는 다원주의의 규범적 다문화주의로 구분되어진다. 다만, 다음의 <표1>에서 학자들의 구분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명확한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정도의 차이를 두고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다층적 의미로 인해 유형화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 다문화주의의 정의

	학자	정의
이데올로기적 가치	Taylor, 1992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순 politics of recognition)
	Soysal, 1994	보편적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비국적자 및 체류 자격 미비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민족국가 시민권을 '탈민족국가' 적인 방식으로 재규정(post-national citizenship)하려는 시도
	Kelly, 2002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라는 고전적인 이분법적 정치이념의 경계를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the latest 'ism)'
	김남국, 2005	공공영역에의 문화적 인정 및 생존 요구를 적극 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역차별적인 방법을 통해 정체성의 정치를 지지하는 것
국민 통합적 수단	Saha, L.J. 1984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와 관용만을 의미하지 않고 한 사회가 '다문화적' 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가 다원주의를 반영하고 이를 구체화해야할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다문화주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있어 권력의 평등하고 합법적인 공유
	Kymlicka, 1995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politics of difference)에 대한 제도적 보장
	정상준, 1995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 운동이라기보다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
	Troper, 1999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으로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으로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형평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김남국, 2005	상호존중,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라는 세 가지 요건의 실현을 통해 시도되는 민주주의의 심화 프로젝트
	원숙연, 2008	포스트모더니즘적 탈-중심화 및 차이에 대한 인정을 본질적 요소로 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윤인진, 2008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
다원주의적 규범	Vertovec, S. 1996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며 각자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고유의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 내는 이른바 '샐러드 그릇(salad bowl)'
	강휘원, 2006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문화에 기반을 둔 다수집단의 정체성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 간의 평화스런 공존을 추구하는 것
	(사)국경없는 마을, 2006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에 관계없이, 모두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

2)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

이미 몇몇 학자들에 의해 다문화주의 정책(multiculturalism policies)의 개념화 및 구체적 기준을 마련, 이에 따라 OECD 국가 분류가 시도되었는데 이는 한 국가가 다문화 정책을 얼마나 채택하고 있는가에 따라 강도를 분류한 것이다. 기준으로는 첫째,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는가, 둘째, 학교 커리큘럼에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가, 셋째, 대중매체에서 인종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넷째, 이중적 시민권(dual citizenship)⁴⁴⁾을 허용하고 있는가, 다섯째, 이주자들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이 존재하는가, 여섯째, 이중언어 교육이나 모국어교육을 위한 지원기금이 존재하는가, 일곱째, 차별받는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존재하는가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구분에 의해 가장 강하게 다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를 들고 있다(Banting and Kymlicka, 2006)⁴⁵⁾.

44) 이중적 시민권이란 이주민이 자신의 출신국가와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드린다는 점에서 한민족으로 동화시키는 정책과 구분된다.

45) 우리나라의 경우 분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Kymlicka는 이미 한국을 단일민족문화를 고수하는 유일한 나라로 분류하였다(1995).

〈표 2〉 Kymlicka의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

원주민 (indigenous peoples)	준국가-국민집단 (substate nationalist groups)	이민자집단 (immigrant groups)
① 토지소유권 및 등기권 인정 ② 지역자치권 인정 ③ 역사적 협정을 인정하고 and/or 새로운 협정에 사인 ④ 문화적 권리(language, hunting/fishing) 인정 ⑤ 관습법 인정 ⑥ 중앙정부의 대표/심의 보장 ⑦ 원주민의 독특한 지위를 헌법 또는 입법 차원에서 인정 ⑧ 원주민 권리에 있어 국제적 수단을 지원/비준 ⑨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 조치	① 연방 또는 유사연장 영토 자율권 ②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공식 언어 지위 ③ 중앙정부나 헌법기관에 대표 보장 ④ 소수자 언어 대학/학교/미디어에 공적재원 지원 ⑤ 다문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또는 의회적 긍정 ⑥ 국제적 인격 부여(국제무대에서 거의 국가적인 행위의 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부여)	① 중앙·지역·지방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헌법, 사법, 입법적으로 긍정 ② 학교교과과정에 다문화주의를 채택 ③ 공적 미디어에서 소수민족표상/감수성을 의무적 편성 ④ 복장규율(dress-codes)면제, 일요일 휴무법 ⑤ 이중시민권 허용 ⑥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수민족 집단 조직에 재정 지원 ⑦ 이중언어 교육 또는 모국어 학습에 재정 지원 ⑧ 불이익에 처한 이민자 집단에 대한 적극적 조치

자료 : multiculturalism policy index

“다문화주의란 사회통합적 관점에 의한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과 구성원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합의된 실천이념이며, 이를 기반으로 전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다문화정책”이라고 정의한다.

〈표 3〉 다문화정책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 모형 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 모형 multicultural model
정향성	국가 및 사회가 원치않는 이민자의 영주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려함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함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며 적극적 조치 등 우대 조치를 마련하려함
정책목표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	소수자의 주류사회 동화	다양성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
국가역할	적극적 규제	제한적 지원	적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관점	이방인, 위협적 존재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	상호 존중과 관용
평등개념	차별의 정당성 강조	사회보장 및 기회의 평등	적극적 조치
법적 수단	단속 및 추방	비차별의 제도화	제반 권리의 허용
정주화	불가능	비교적 가능	가능
국적부여 원칙	속인주의, 엄격한 조건	속지주의, 융이한 조건	속지주의, 이중국적 허용
정체성	이질화	동질화	이질화
사례국가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다문화주의에 관한 서구의 다양한 논의들을 한국적 상황에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 담론의 이상과 우리 현실에 대한 명확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

2.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논의와 문제⁴⁶⁾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다문화담론에 대해 논의할 때, 우선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와 우리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5년부터 정부를 비롯한 미디어, 학계,

46) 이하의 내용은 신은주, 2010.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과 통합적 복지서비스』.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자료집.내용을 인용한 것임.

그리고 정부지원 단체와 정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다문화'를 채택했고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은 가히 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한국이 전 세계 184개 국 중에서 아이슬란드와 함께 유일하게 단일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 '한 핏줄 한 민족 한 문화' 신화를 대표하는 나라⁴⁷⁾라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한편 긍정적인 평가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점들 또한 적지 않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외국인 문제의 위상이 "대통령 지시 과제"로 격상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6년 4월 국정회의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후 정부의 각 부처는 "이주자를 통합하려는 다문화주의 정책" 개발과 입안을 위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주의 이주민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대상 범주와 방법론이다. 정부가 고려하는 다문화 정책의 대상범주는 결혼이민자가정이다. 결혼이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이민이 이주자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위상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오경석, 2007; 33).

47) 2007년 8월 18일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6년 한국정부가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도입, 재한외국인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의 강조, 국제결혼 자녀 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차별, 외국인 여성배우자에 대한 불충분한 권리보장,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에 의한 심각한 권리제한 등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단일민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영토 내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과 타국적인 사이의 이해, 관용과 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순수 혈통', '혼혈'이란 용어사용과 그로 인한 특정인종 우월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구체적으로는 초·중등 교과목에 다른 인종·국가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모든 인종·국가 간의 이해, 관용, 우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07.8.21)

서구의 경우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적인 사회구성과는 가장 거리가 먼 문화적인 병합(amalgamation)의 대상일 뿐이다(Kymlika. He, 2005; 오경석, 2007 재인용). 정부의 다문화정책에서 국내이주민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범주적으로 배제되어 버린다.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일 수 있다는 입장을 수용하는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한계는 명백하다. 이주노동정책이 다문화주의적인 외국인 통합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주문제를 다루는 공론장에서조차 주변화되는 역설이 초래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 역시 가부장주의, 순혈주의에 근거한 동화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김희정, 2007). 정부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중심범주를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커플로 설정함으로써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커플을 주변화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정혜실, 2007).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은 일방적으로 적응 내지 통합되어야 할 대상이지, 결코 다문화 사회의 대등한 주체로 평가되지 않는다.

2000년 한국에서 형성된 다문화주의 담론은 국가가 주도하고 이런 담론에 동참한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확산된 양상을 띠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국사회의 저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서 국제결혼을 후원하였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자녀의 사회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되고 전 세계적 경향에 부합하는 '다문화'라는 이름의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김희정, 2007:38).⁴⁸⁾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비교해서 힘들지 않고, 사

회적 공감과 지지를 받고, 정부로부터 위탁사업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기존 활동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하면서 다문화주의가 민간영역에서도 확산되었다는 것이다(이선옥, 2007:85).

천선영(2004)은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이해와 관용, 융화와 화합을 말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근대 국가단위사회에서의 문화적 단일성 내지는 동질성을 재확인 내지는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선옥(2007;85)은 일부 시민단체의 다문화주의에 대해 더욱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녀에 따르면 일부 지원단체들은 “NGOs와 준정부기구의 사이에서 불분명한 정체성을 지닌 채 이주노동운동을 진행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의 불분명한 관계로 인하여 “지원단체는 기존에 주력하였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문제와 노동허가제 논쟁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한편, 해결점이 쉽게 보이지 않는 노동 문제에 거리를 두고 상대적으로 정부에 받아들여지기 쉬운 국제결혼여성의 권리문제와 이주아동의 교육문제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문화행사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는 겉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순혈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동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인 합법 외국인과 불법 외국인으로 구분되고 불법 외국인은 다문화주의의 주체로부터 배제되게 된다.

문경희(2006)는 현재 국제결혼의 증가라는 상황에서 정부와 주류 언론이 다문화주의 도입

4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한국업 대표는 '코시안'이라는 용어가 인종차별적이라는 거부감과 반대가 있자 미국에서 '이주문화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착안하여 '다문화자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외국인 배우자의 권리나 지위문제보다는 다문화주의 실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이용한다면 이주자, 특히 저숙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한국에서 소수문화의 특수성을 배제하는 다수문화 보편주의의 성향을 띠는 다문화주의가 시행된다면 국제결혼 이민여성들의 문화적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소수집단 내에서 주변화되는 여성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현재 우리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담론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이주자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다문화 정책 역시 가부장주의, 순혈주의에 근거한 동화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셋째, '다문화주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주민 자신들의 목소리는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III. 한국의 다문화가족 현황⁴⁹⁾

1. 한국의 다문화사회화 현황과 특징

1) 다문화사회화 현황⁵⁰⁾

Troper(1999)는 다문화주의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가치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 그리고 인종, 민족, 국적

49) 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2010. 5.7.),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안) <2010~2012> , 내용 발췌요약.

50) 이하의 내용은 신은주, 2010.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과 통합적 복지서비스』.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자료집.내용을 인용한 것임.

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태생 인구비율에 의한 다문화사회 규정은 최저 3% 이상부터 5% 이상(법무부 외국 인정책본부)으로 논자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 비율에 의한 구분이 이전의 누적된 다문화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외국태생 인구 비율은 미국 14.8%, 캐나다 19.9%, 호주 24.6%, 독일 8.8%, 영국 4.5%, 덴마크 5.2%, 홍콩 7.8%이다.

먼저 한국의 인구학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외국인주민 조사 현황

		계	남	여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근로자	552,946	380,847	172,099
	결혼이민자	141,654	18,561	123,093
	유학생	86,947	42,232	44,715
	재외동포	83,825	41,410	42,415
	기타외국인	137,370	73,316	64,054
	소계	1,002,742	556,366	446,376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귀화자	69,804	4,317	65,487
	기타사유자	41,306	16,947	24,359
	소계	111,110	21,264	89,846
외국계 주민자녀	외국계주민자녀	151,154	76,985	74,169
계	외국인주민(2.5%)	1,265,006	654,615	610,391

자료 : 행정안전부(2011)

행정안전부는 국적취득과 체류의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규정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는바, 2011년 현재 외국인주민은 주민등록인구 50,515,666명의 2.5%에 해당하는 1,265,006명이라고 발표하였다.⁵¹⁾ 그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002,742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9.3%에 해당하였다. 한국국적이 아닌 자의 구성은 외국인 근로자가 552,946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하고, 결혼이민자가 141,654명으로 전체의 11.2%,에 해당하며, 유학생이 86,947명으로 6.9%,, 재외동포가 83,825명으로 6.6%, 상사주재원 등 기타 외국인이 137,370명으로 10.9%다. 한국국적 취득자는 111,11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8.8%에 해당하였다. 그 중 혼인귀화자는 69,804명으로 전체의 5.5%, 기타사유 취득자는 41,306명으로 전체의 3.3%에 해당한다.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국적별, 성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⁵²⁾, 중국 국적자가 515,786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57.8%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미국, 네팔 등 남부아시아가 많았으며 일본, 몽골, 대만,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순이다. 중국국적자 중 조선족은 378,345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42%에 달하였다.

유형별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국가별로는 중국 58%(조선족 51%), 동남아 29%, 남부아

51)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주민에 대한 유형별·국적별·성별 현황을 조사하여 7월경 발표함(www.laiis.go.kr참조)

52) 국적별 실태만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2008). 외국인주민 거주실태조사 결과. 참조함.

시아 5%, 몽골 3%, 중앙아시아 2% 순으로 조선족과 동남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국제결혼자의 출신국은 중국 52%(조선족 32%), 동남아 28%, 기타국가 7%, 일본 6%, 대만 3%, 몽골 2% 순이다.

한국의 인구학적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외국인주민 비율이 2.5%여서 아직까지는 한국을 다문화사회로 보기에 부족하고 다문화사회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³⁾ 그러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들이 계속 증가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생율과 관련한 인구구조학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다. <표3>는 통계청이 발표한(2009.8.19) 2000년대 연도별 출산율이다. 이 표는 2008년 출산율이 1.19명으로, 2005년 1,076명에서 2년 연속으로 증가하다, 다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연도별 출산율(00~08년)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산율	1,467	1,297	1,166	1,180	1,154	1,076	1,123	1,250	1,19
증감	0,057	-0,170	-0,131	0,014	-0,026	-0,078	0,047	0,127	-0,06

출처 : 서범석(2010) 108

또한 정부의 예측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이주민규모의 상승속도는 지속될 것이며 그

53) 외국태생 인구비율에 의한 다문화사회 규정은 최저 3%이상부터 5%이상(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으로 논자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는 동 비율에 의한 구분이 이전의 누적된 다문화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임. 참고로 외국태생 인구 비율은 미국 14.8%, 캐나다 19.9%, 호주 24.6%, 독일 8.8%, 영국 4.5%, 덴마크 5.2%, 홍콩 7.8%임.

결과 2020년에는 전 국민의 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민족사회로 논의되는데 전혀 이견이 없는 호주나 독일의 수준에 이르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다 (<표 8> 참조).

〈표 8〉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 전망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체류외국인(만명, %)	74.7(1.5)	142.2(2.8)	253.9(5.0)	305.7(6.0)	357.4(7.4)	409.2(9.2)
전문인력(%)	3.3	5.0	7.0	10.0	15.0	20.0
결혼이민자(%)	10.0	9.3	10.0	12.3	14.0	15.1
체류외국인 비율동일국가	핀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아일랜드	호주	독일

출처 : 2006. 8. 법무부, 외국인정책 관련 환경변화 미래예측 보고서(차용호, 2008 재인용).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한 축인 국제결혼도 종래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아닐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상사직원 및 유학생의 유입 증가와 한국인의 외국유학 및 외국주재 근무 등 국제교류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나, 국제결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에 의한 외국인 여성배우자와의 결혼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전망은 한국의 경제 사정 및 이에 따른 정책, 송출국의 상황, 국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자명하나, 한국사회가 점차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갈 것이라는 전망은 타당하다고 본다.

2) 한국의 다문화사회화의 특징

한국의 다문화사회화는 처음부터 다민족·다문화 국가로 출범한 미국, 캐나다, 호주

와는 확연히 다르고, 민족국가로 출범하여 외국인노동자가 많아 다문화사회가 된 프랑스, 독일과도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화의 주류가 혈연적으로 같은 민족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물론이고, 2009년 5월 현재 외국인주민 등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전체 외국인의 40.1%(443,836명)이며, 재외동포가 4%(43,703명)를 차지한다. 결혼이민자 중 28.2%는 조선족으로 그 자녀는 혼혈인이 아닌 완전한 한민족에 속하고, 민족이 다른 결혼이민자의 자녀도 한민족 혼혈인으로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다른 외국의 경우와 확연히 다른 것이다.(〈표 9〉 참조)

〈표 9〉 외국인주민의 국적별, 민족별 특징

	전체 891,341	동북아						동남아	남부& 중앙아 시아	기타
		중국인배경				기타 동북아				
		소계	중국	조선족	대만					
합계	100.0	60.1	15.4	42.4	2.3	5.1	22.1	5.4	7.3	
외국 국적	86.1	58.7	84.1	79.9	85.4	87.5	81.9	88.9	6.0	7.6
귀화	7.4	85.8	10.5	12.2	10.2	4.9	2.0	2.8	0.9	3.4
자녀	6.5	50.1	5.4	7.9	28.8	7.5	16.1	8.2	2.0	7.1

* 출처 : 행정안전부(2008)

둘째, 타민족 출신의 경우도 대부분 아시아계로써 피부색과 골격, 문화 등에 있어서 한국인과 차이가 있지만, 서구사회의 흑인, 인디언, 동양인 등의 유색인과 히스패닉 및 아랍인 등과 같이 크지는 않다. 서양인의 눈에는 이들은 한국인과 같이 동양인으로 보고 있고, 한국인들도 중국인, 일본인, 몽고인 등 동북아 출신자들이 자신의 출신을 밝히

기 전에는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정착보다는 돈을 벌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의 제도가 이들의 정착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가족형태를 이루어 정착하는 것은 조선족이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로 순수하게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정이 정착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드물고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한국의 국적법 및 이민정책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미국·캐나다·호주의 경우 거의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정착을 염두에 두고 이주하여 실제 정착하였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정부의 갖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아랍노동자들이 정착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끝으로,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자가 많다. 외국의 경우는 이주 후 생활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기존의 국민 또는 타 인종·민족 출신과 결혼하나, 한국에서는 이주를 목적으로 결혼하거나 결혼과 동시에 이주가 이루어진다. 이들은 국적법에 의해 희망할 경우 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쉽고, 이들 자녀는 자동으로 국적이 취득되는 한국인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한국문화를 잘 모르는 한국인이 많을 것이고, 동시에 많은 혼혈인이 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한국 이주자의 특성은 다문화 정책 및 교육이 외국과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달라야 하는 논거가 된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단기간 내에 외국과 같이 특정 민족집단이 집단거주지를 근거로 세력을 형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⁵⁴⁾

54) 외국인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 자체가 다민족·다인종 국가인 점도 특정 민족집단이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기 어려운 이유가 됨

따라서 한국에서의 다문화 논의는 서구사회의 문화 및 집단간의 갈등 해소차원의 논의보다는 이들에 대해서는 인권보장과 차별시정에 중점을 두어야하고, 다문화사회화를 계기로 세계화 시대와 선진사회에 부합하는 국민의식의 성장을 통해 국가발전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족현황

현재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위주의 정책이며, '농촌총각과 결혼한 필리핀 새댁'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있는 결혼이주민에 대한 시선은 남성결혼이주민의 문제를 비가시화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부계혈통주의'의 뿌리가 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정정훈, 2011: 359-360).

또한 이주남성과 한국여성의 결혼, 귀화해서 한국인이 된 이주민 간의 결혼 등 다문화가족 지원법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가족관련 상담이 200개 다문화지원센터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 결혼이주민 변화 추이

2011년 6월 기준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은 1,265,006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결혼이주민(혼인귀화자 포함)는 16.7%인 211,458명, 외국인주민자녀는 11.9%인 151,154명으로 집계된다(행정안전부, 2011.6. 통계). 결혼이주민의 국적별 분포비율은 예년과 같이 중국 57.3%, 동남아 29.5%, 일본 5.1%순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결혼이주민의 국적이 중국 중심에서 동남아, 일본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농촌의 재생산 위기타개책으로 시작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의 증가는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결혼의 11%가 넘어 일반적인 결혼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으로 당시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소수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국제결혼의 대부분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으로 현재 결혼이민자 181,771명 중 여성이 89.1%(161,999명)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처음에는 농촌총각들이 중국조선족 여성들과의 혼인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여성 이주화라는 특징과 국가 간, 지역 간의 불균등한 경제발전이 기인하기는 하나 그 안에는 인종, 계급, 젠더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⁵⁵⁾

2) 결혼과 경제생활 실태

〈표 10〉 국제결혼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남자 +외국여자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한국여자 +외국남자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총계	11,605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전년대비 증가율		25.1	4.6	62.9	39.8	22.3	-8.5	-3.1	-3.7	-8.1	2.8

자료 : 통계청(2011)

55) 장명선, 2010, “결혼이민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주인권가이드라인, 327-328.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민이 현 배우자를 만난 경로는 ‘결혼중개업체(25.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가족, 친척의 소개(23.3%)’, ‘친구, 동료의 소개(23.1%)’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 ‘스스로 배우자를 만난 경우(18.2%)’, ‘종교기관을 통해서 만난 경우(6.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6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 나타난 결혼중개업체(17.7%)에 비하면 중개업이 많이 성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친구나 동료의 소개’로 나타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결혼중개업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남성결혼이주민의 경우를 따로 분석할 경우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즉 국제결혼과정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외국인 남편의 60%가 일하러 한국에 입국하였고, 결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5명 중 1명 정도이다. 한국인 부인을 만난 경위는 주변 사람의 소개나 우연한 기회에, 또는 일을 하면서 주로 만나게 됨. 이를 볼 때 남성결혼자의 대다수는 이주노동자로 입국하였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별에 있어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도 21.3%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출신국적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필리핀(28.7%), 중국조선족(24.7%), 캄보디아(23.7%), 베트남(22.5%), 태국(21.1%)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는 결혼이민자의 40%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여성은 37%, 남성은 74%로 여성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미취업인 결혼이민여성은 일자리 알선(29.6%), 자녀보육 양육지원(22.9%), 한국어교육(18.4%)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3)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관련실태

〈표 11〉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이혼율의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한국남자 + 외국여자	247	387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한국여자 + 외국남자	1,251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전년대비 증감율(%)	6.8	13.1	3.0	15.4	64.0	26.4	47.1	41.3	29.8	3.9	-3.8

자료 : 통계청(2011)

2010년 외국인과의 이혼은 11,245건으로 전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이혼 중 비중은 9.6%로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한국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이혼은 70.3%인데 비해 외국남성과 한국여성의 이혼이 29.7%로서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이혼이 2.3배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이혼한 한국부부의 동거기간을 보아도 한국인들의 동거기간이 14년이고, 5년 미만 이 22.1%인데 비해 한국남편과 외국인 처 동거기간 5년 미만(0~4)인 부부가 79.4%로서 평균 동거기간은 3.2년인데 비해 외국 남편과 한국인 처의 동거기간 5년 미만인 부부는 63.2%이며, 평균동거기간은 6.0년으로 그 이유는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은 서로 사귀는 기간이 있고 서로가 알고 나서 결혼한 것, 가정폭력이 적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사실상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상담 경험에 의하면 이혼상담이나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90%이상이 중개업체의 알선에 의한 결혼이었으며, 본인들

의 사궤에 의해 결혼 경우는 매우 극소수이다.(한국염, 2011, 결혼중개업에 대한 검토 및 논의와 실제사례 검토 및 토론, 국제결혼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특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동거기간은 1996년 5.5년에서 2001년 2.7년으로 5년 사이에 2.8년, 2006년 2.2년으로 2001년 대비 0.5년 감소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최근 3년간 소폭 증가 추세에 있음(2007년, 2008년 각각 2.5년, 2.7년).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중 재판에 의한 이혼의 비중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해 2008년 63.3%를 차지한다. 이혼의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배우자나 그 외 가족의 모욕과 폭언, 신체적 폭력, 정신적 학대 등인데,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각종 폭력이 개입되어 있을 정도로 이러한 요인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배우자나 시댁 식구의 각종 폭력이 이혼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꼽히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등에서 철저하게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남편 등 다른 가족원들의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기 쉬움. 게다가 상업적 거래가 개입된 결혼을 한 개도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멸시와 모욕, 신체적 폭력 등에 직면할 위험은 더욱 크다(김이선 외, 2010, 여성가족부).

IV.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⁵⁶⁾

1. 다문화정책의 근거로서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결혼이민자 가족을 중심으로 흡수, 통제, 관리 기초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이민 정책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의거해 수행된다.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를 둔 외국인에 대한 최초의 5개년 국가계획으로 대상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 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 등 네 가지 미션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외국인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기본 계획의 핵심 목표가 외국인의 인권 보호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점, 외국인을 전문 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하여 차별 처우한다는 점,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체류 질서를 강화하는 모순된 정책이라는 점 등에서 기본 방향의 전면적인 재정립이 요청된다.

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08년 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각 정부부처 조정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바뀌고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부처명을 변경함에 따라서 가족정책은 복지부 가족정책국으로 이관하였다.

56) 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2010. 5.7.),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안) <2010~2012>, 부분별 재구성,

그 후 2010년 3월 여성부의 명칭이 다시 여성가족부로 환원되면서 가족관련 업무는 여성가족부로 재이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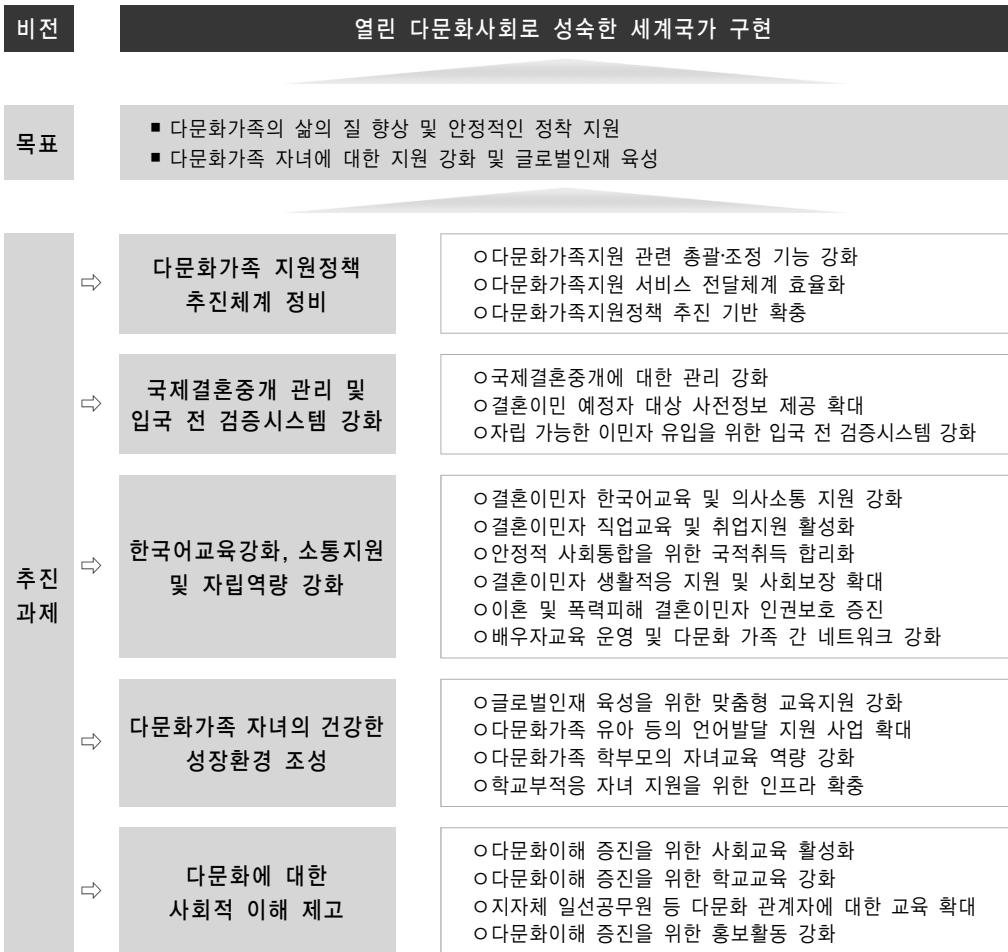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가족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에 소관주무부처가 우왕좌왕함으로서 그와 관련된 긴급한 국가정책 예컨대 저출산 고령화, 보육과 이동교육, 노동력유입과 일자리창출, 여성과 결혼이민자의 고용안정화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의 부재 또는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성인지적 정책수립과 접근방안이 지체되거나 결여됨으로서, 출산과업과 돌봄노동과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사회적 위험부담과 비용을 간과하였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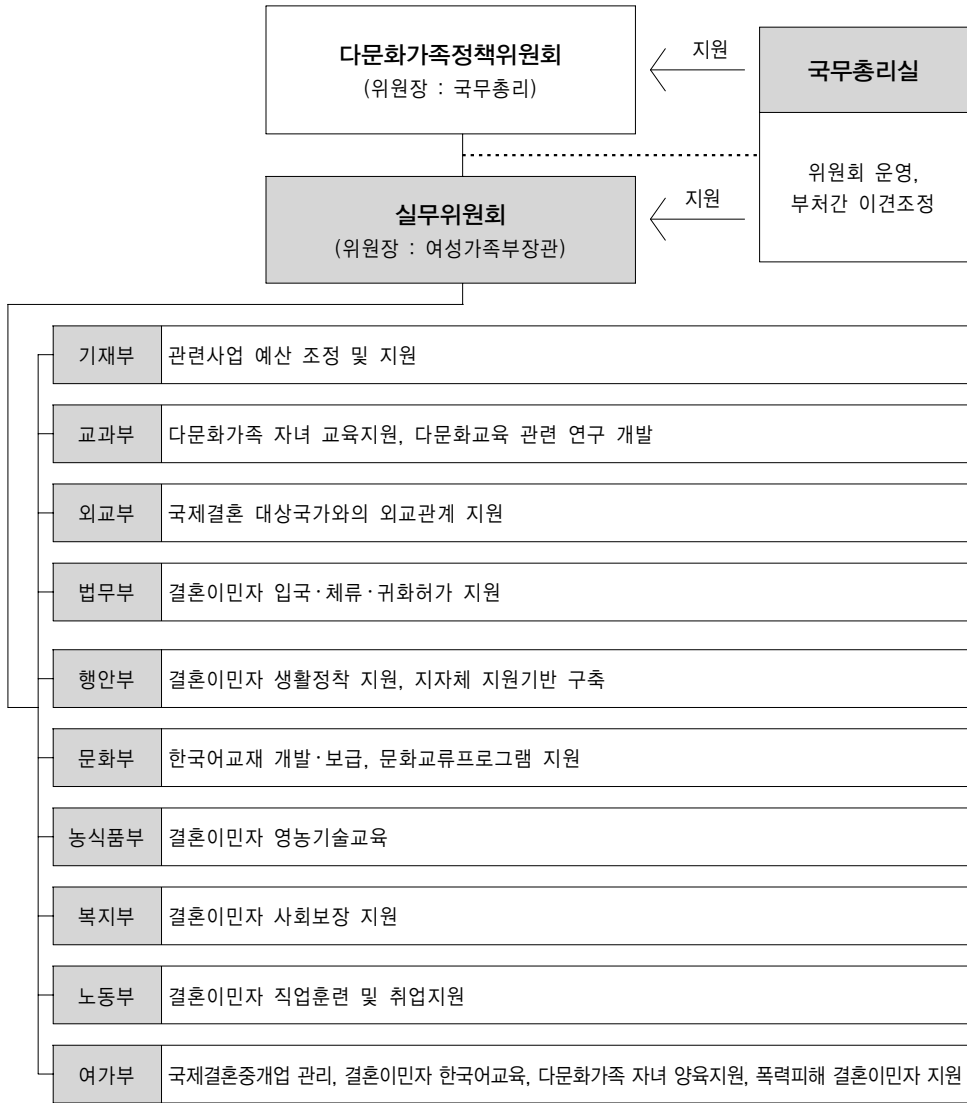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비등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다문화 관련한 사업은 각 소관 부처마다 다기하여 사업 간의 유사성, 중복성, 효율성미비등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약 20여 년 전에 다문화관련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최근 5년 동안 비교적 단기간에 다문화에 대한 관심고조로 인하여 각 중앙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한테서 비롯된다. 정부 각부처간 서로에 대한 정확한 연계와 정보가 없으므로 행정체계 정비문제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최근 문제점으로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 사실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갈등문제도 있었으며, 유사사업 조정 등을 위한 총괄기능도 매우 미약하였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전담조직이 미약하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다문화사업 체계가 미성숙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 전달체계가 분산적이고 격차가 심하여 지역별 서비스별로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⁵⁷⁾.

그와 같은 주제의 심각성으로 2009년 12월에 국무총리실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설하고 다문화에 관한 각 부처별 업무의 심의 조정에 들어가서 2010년 5월에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2010~2020)을 발표하였다.



57) 지역단위에서 다문화가족관련 추진체계가 부처별로 구축되어 혼란초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에도 한국어교육, 직업훈련, 취업지원, 다문화강사양성을 개별단위에서 추진하는 기관이 지자체, 개인 기관단위에서 지역별로 많이 산재하고 있다.



[그림 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도

3. 다문화정책의 현황

다문화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주요대상계층인 결혼이주여성가족을 위한 법제,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결혼이주여성관련 법령

다문화 정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들 수 있으며, 복지관련 법령으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들 수 있다(김영주, 2010: 51-7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모든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자녀의 보육과 교육 등의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 가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임신·출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을 포함하는 전체 거주 외국인의 임신과 출산 및 모성건강에 대한 지원을 담아야 할 것이다.

「다문화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금지, 자녀의 보육 및 교육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표 12〉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령의 평가

법안	내용과 평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적용대상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가정과 귀화한 가정으로만 제한됨으로써 많은 이주민 가정을 배제하는 차별적 성격을 띠며, 합법적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제한을 받고 있어 대상의 한계, 지원내용의 한계를 드러냄. 법의 목적 자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이므로 이주여성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에는 취약한 한계를 가짐.

법안	내용과 평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 주무부서는 여성가족부이나, 2010년부터 중개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었음. 그러나 지방정부는 농어촌 인구 증가 및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농어촌 지역의 미혼 남성에게 국제결혼 수수료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 지원사업은 국제결혼중개업체와의 협력이 불가분하고, 이러한 협력 관계는 지방정부의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형해화시키고 있음. -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질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제공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이 도입되어야 함.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관청인 지방정부는 농어촌 지역 미혼 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수수료 지원 정책을 중단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여야 함 - 한국뿐만 아니라 현지 브로커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나 개인 브로커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국제인신매매방지법' 정의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하여 원하는 경우 한국에서 체류권과 취업권을 갖고 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도 국제기준에 의한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해야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9.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9년 5월8일)이 개정되어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그러나 외국인 신분의 이주여성은 보호대상에서 배제.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 여성에게도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외국인 여성" 항목을 명기할 필요가 있고, 한국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에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다. 법령은 정책 주진의 근거가 되며, 정부의 관련 정책 기초 및 방향과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관련 법령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제3조 기본이념과 제4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에 관한 조항에서, 자신 또는 부모의 “인종”에 따른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하고, 차별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외에도 모든 외국인주민의 자녀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영유아보육법」은 제3조의 보육이념과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조항이 관련되는데, 보육이념에 대한 규정에서는 「아동복지법」과 달리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03조에서 영

아, 장애아와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건강에 대한 권리와 보건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데, 이 법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보호와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제10조 건강권에서도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국적 미취득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집단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32조에서 포괄적으로 여성의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에서는 제3조의 3항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이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모자보건 및 보육,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제반 지원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임산부’나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와 같이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출신구가 등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특별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주요정책 현황: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내용이 지원정책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대책」에서 부터이다. 당시 빈부격차·차별 시정위원회에서 대통령 주재의 제 74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하여 발표한 이 대책은 결혼이주여성의 보건서비스 지원과 자녀 양육 지원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 대책

에 포함된 결혼이주여성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30일에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이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대책」) 으로 발표된바 있다.

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대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로서 3단계를 ‘자녀 양육기’로 설정하고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을 담고 있는데, 이전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보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의 부분이 대폭 강화되어 있다.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대책」을 통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와 보건소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임신·출산 지원에서는 ‘임신·출산 방문 지원서비스’,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두 번째,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 배양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지도사를 파견하는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사업과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남편대상 육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버지 육아교육’을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세 번째,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강화 분야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와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사업’, ‘보육시설 다문화프로그램 강화’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네 번째, 부모 및 자녀의 건강관리 분야는 의료 취약계층인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에게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로서,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보건소 등록관리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예방접종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다언어로 제작한 ‘자녀 예방접종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다언어로 제작한’ 자녀 예방접종 정보집’을 배포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V. 다문화정책의 평가

현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계중심적 가족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선희·전영평, 2008;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점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녀 출산 및 양육자로서의 적응과 역할수행에 방점이 주어졌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다문화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자녀 돌봄에 취약한 가족의 돌봄 기능을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해야 할 과제를 증대시키게 되었다. 최근,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유래 없을 정도로 낮아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이는 가운데,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것도 여성의 재생산권과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 개인의 다양한 생애설계와 행복추구권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건강권,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반 사회적 지원이 포괄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김인춘·최정원, 2008).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 및 범주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은 젠더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단계별 인권침해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1. 젠더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정책

다문화가족의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정책들은 과연 어떠한가? 2006년 이후 다문화가족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은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8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에서는 ‘자녀양육기’에 임신·출산 및 양육 관련 서비스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임신·출산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모자보건’에 치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이전 시기와 출산 이후 시기의 모성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관심이 필요하다. 즉, 가임기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문제와 그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폭넓게 본다면 모자보건의 대상은 임신, 생산, 양육 과정에 있는 15세 이상 49세까지의 여성과 성장기 아동을 포함한다.(조영미, 2008.)

결국 다문화가족의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정책은 젠더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젠더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에 관한 정책의 영역과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13>과 같다⁵⁸⁾.

58) 젠더관점에 대한 평가및 논의는 김영주, 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젠더 관점과 다문화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1): 51-73.를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표 13〉 젠더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출산 및 자녀양육 정책의 내용

주요 영역	젠더 관점의 내용
임신·출산에 관한 선택 및 결정권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선택 및 결정권 확대
모성에 대한 재평가 및 지원	모성개념의 확대, 다양한 양육 주체들의 모성활동 지원
자녀양육에 대한 성별분업체제 극복	아버지의 양육참여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다문화가족의 보육 지원

첫째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독립된 인격체로서 임신·출산과 관련한 상황에서 선택 및 결정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혹은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정책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와 관련된다. 재생산권은 여성 자신이 출산을 할 권리와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 등 자신의 몸과 재생산에 관련한 행위 및 상황에 있어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 및 자율성을 지닐 권리를 의미한다.

둘째, 젠더 관점에서 모성은 여성 개인이 자연스럽게 지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아니라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제도가 결합된 것으로서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모성은 여성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해야 할 영역이다. 따라서 모성활동을 여성의 역할로 규정짓지 않고, 사회 전체가 책임지어야 할 영역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놓여있는 양육 주체(여성, 남성, 가족 등)들의 모성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모성활동의 지원은 자녀 양육에서의 전통적인 성별분업 체제를 극복하는 것과 연관된다.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는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생계부양자인 남성과 자녀양육자인 여성이라는 성별분업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성 평등적인 가족문화의 확산에 기여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의 참여에 취약한 국제결혼가정의 남편들의 자녀 돌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출산 및 양육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 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은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국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 등을 이유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현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등 제도가 운용되고는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이나 남편이 일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제도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체의 생산직, 서비스직, 농어업직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2. 인권관점으로 본 다문화정책

1) 국내 법제와 정책

이주 관련 정책과 법제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시급한 과제들로는 입국 전 단계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사증 발급 기간의 장기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부실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중개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사증 발급시 요구되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보장 적용시 한국인 자녀의 양육여부에 따른 차별 시정을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귀화 신청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결혼 이주여성의 귀화시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의존성 및 한국인 자녀의 양육여부에 따른 차별 문제가 시정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이슈와 쟁점

이슈	쟁점
결혼 이주여성의 사증 발급 기간의 장기화 추세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의 혼인 파탄율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 전 이주여성의 위장결혼 등을 심사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입장. 그러나 심사의 객관적 기준 미비하며, 혼인 신고 후 이주여성의 낮은 귀국으로 인하여 상호 결혼 상태를 유지할 지 여부에 대하여 오히려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음(열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법언을 상기시킬 필요 있음).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부실 관리의 문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영리목적의 상업 시스템하에서 등록제로 운영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제결혼 중개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음. 결혼중개업법 개정 방향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여 허가제, 처벌 규정 추가, 비영리 운영 등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결혼이주여성의 사증 발급에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요구의 문제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주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예측되고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더라도 강제추방의 위험 때문에 법에 호소하지 못함. 신원보증제도는 폐기되어야 함.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보장 적용시 한국인 자녀의 양육여부에 따른 차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한 사회보장 혜택이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시부모부양의 경우에 한 혜택이 있도록 차별적임. 법령 개정으로 차별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함.

귀화 신청 단계: 결혼 이주여성의 귀화시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의존성 및 한국인 자녀의 양육여부에 따른 차별 문제. 본국적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무국적자로 전락하는 (국적 상실제도의) 문제점

VI. 결론 및 제언

현재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 위주의 정책이며, '농촌총각과 결혼한 필리

핀 새택'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있는 결혼이주민에 대한 시선은 남성결혼이주민의 문제를 비가시화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부계혈통주의'의 뿌리가 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정책의 법적 근거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제2조 정의규정을 통해 법 적용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소한 정의 규정은 고용허가제로 이주한 이주여성, 남성, 이주노동자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아동, 외국인 유학생과 그 동반자, 무국적 외국인과 그 가족의 문제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이같이 한국인과 가정을 구성한 결혼이민자에게만 정착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가족의 구성과 혈통의 유지'라는 측면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결과로서 국적과 혈통에 기반을 둔 차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합법적' 체류자격의 외국인만을 법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이 합법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정착지원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고 초과체류 상태가 된 결혼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또한 배제된다. 이는 또한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는 그 향유자와 체류상태에 좌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마땅함에도 배제되고 있는 법 현실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인권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계중심적 가족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점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녀 출산 및 양육자로서의 적응과 역할수행에 방점이 주어졌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다문화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결혼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방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책이 ‘가족중심’에서 ‘여성 개개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자녀 돌봄에 취약한 가족의 돌봄 기능을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해야 할 과제를 증대시키게 되었다. 최근,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유래 없을 정도로 낮아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이는 가운데,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것도 여성의 재생산권과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 개인의 다양한 생애설계와 행복추구권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건강권,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반 사회적 지원이 포괄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

셋째, 결혼이주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결혼이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에 대한 정보를 결혼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

어로 제공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특히 임신과 출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주민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보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결혼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모성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넷째,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외국인 차별금지를 위해 『다문화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일반시민 및 담당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해야한다.

참 고 문 헌

-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안(2010~2010), 국무총리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김승권, 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주, 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젠더 관점과 다문화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1): 51-73.
- 김이선 외, 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서울 : 여성가족부.
- 김이선(2008), 다문화사회의 전개양상과 문화정책방향,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선·김재원, 201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없지만 유효한 법: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개실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6: 305-383.
- 김종철, 2011, “이주여성의 이혼 후 국적취득 영주권 취득에 관한 검토,” pp. 51-53.
- 김혜순, 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련을 위한 전제들,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다문화실험: 최근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 박지영,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화순 외, 2008,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상환, 2010,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기초연구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소라미, 2009,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이주분야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활동가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_____, 2010, “젠더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족지원법제 검토문,” 『이주인권가이드라인』 pp.75-77.
- 신은주, 2010.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과 통합적 복지서비스』. 한국아동 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자료집.
- 여순호, 2008, 『한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해소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2011, “한국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21(1): 111-131.
- 이선주 외, 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명선, 2010, “결혼이민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주인권가이드라인』, pp 327-328.
- 장서연, 2009. 사회권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의 이해, 이주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이주분야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활동권 워크숍 자료집. pp. 169-217.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1,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관련 민간보고서』,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염, 2007a, “결혼이민자가족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정책 다시보기 토론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 5개 단체.
- _____, 2007b,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는 지원법이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토론회.
- _____, 2011, 『유엔여성차별철폐 이주여성과의 관련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보고서』, 서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8, 『적응과 폭력사이에서: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 모음』, 서울: 한국이

주여성인권센터.

- 황정미, 2009, “이주의 여성화’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연구』 9(2): 1-37.
- Anderson, Terry H.(2004), *The Pursuit of Fairness: A History of Affirmative A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isby,C.L.& Reynolds, C.R.(ed.)(2005), *Comprehensive Handbook of Multicultural School Psychology*,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Hopps, J.G., Christer Toruse, R. W.,& Christian, O.(2002), From Problems to Personal Resilienc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Practice with African American Youth. In Daine de Anda(ed), *Social Work with Multicultural Youth*(55-77), NY: Haworth Pres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2005),*World Migration Report 2005*. IOM.
- Kimliccka, Will and Baogang He(eds.)(2005), *Multiculturalism in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kin, susan M (1998), “Feminism and Multiculturallism: Some Tensions” *Ethics*,108: 661-684.
- Smolicz, Jerzy J.(2001), “*Globalization and Culural Dynamics in a Multicultural State: Australian Multiculturalism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ialogue and Universalism* 11-12: 27-41.
- Thompson, Susan et. al,(1998), *Multiculturalism and Local Governance: A National Perspective*, NSW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Ethnic Affairs Commission of NSW.
- Tropper. H.(1999), *Theoring Multiculturalism*, A Guide to the Current Debate, NY: Blackwell.

국제결혼 이주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방안

조원권_우송대학교 학사부총장

국제결혼 이주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방안

조원권(우송대학교 학사부총장)

목 차

- I. 연구개요
- II.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
- III. 베트남의 국제결혼 이주에 대한 의식조사
- IV. 결론

I. 연구개요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결혼이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이주의 주
요동기가 본국에 남겨둔 가족들의 부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혼인생활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40%를 다문화 가족이 점유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
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결혼이주자 본국의 문화와 한국에 대한 인
식, 결혼이주에 대한 동기나 목적 등 실태파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의 경우 사회·문화 및 경제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한국에서
의 결혼생활 유지에 장애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모계사회의 유풍이 강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가정에서의 경제적 주도권 및 혼인후의 경제활동을 당연시하나 한국에서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음에 따른 갈등도 결혼생활 유지에 장애로 작용하며 혼인해체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본국에서의 친정가족들이나, 한국으로의 결혼 예정 또는 희망 여성의 결혼이주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해체 등 부작용을 줄이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결혼이주여성 본국에서의 한국으로의 결혼이주에 대한 동기나 목적 등 결혼이주에 대한 베트남 현지민 중심의 인식 및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현재 한국에서의 결혼이주 다문화 가족의 해체(이혼, 별거 등)사유나 실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사회에의 순조로운 적응과 혼인 생활 지속(이혼율 감소)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한국에서의 결혼이주자의 다문화 가족의 형성과 해체 이유에 관한 문헌자료조사
- 혼인형성과 혼인해체(이혼, 별거, 사별 등)의 과정과 추세 등에 관한 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 자료 등 문헌자료 조사 실시
- 또한 혼인형성의 주요 원인이나 동기 목적 및 해체 사유와 혼인해체 과정에 수반되는 문제점이나 당사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등에 관한 실태조사
-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베트남 출신 여성의 친정가족(부, 모, 남매, 자매 등) 및 한

국 남성과의 결혼 예정(또는 희망) 여성의 한국이주 결혼에 대한 동기나 목적 등 인식조사와 결혼이주 전 결혼 중개기관이나 업체등과의 접촉여부, 결혼관련 사전 교육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최근 결혼이주 여성 출신국 중 상대적으로 혼인 및 이혼율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150명(기 이주여성의 친, 인척 등 가족 30명, 결혼이주 예정(희망)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및 전화인터뷰 실시

○ 현지민 중심의 한국으로의 결혼이주에 대한 인식조사와 알선 등 이주 실태 및 관련 제도 조사와 다문화가족 형성과 해체에 관한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개선방안 제시

나. 연구방법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 자료와 통계자료 및 각종 자료들을 조사 분석함

— 한국에 정착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결혼이주 동기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실태조사, 이혼에 따른 문제점과 그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를 검토함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 최근 국제결혼에 있어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으로의 결혼이주에 대한 인식 및 결혼이주 과정에 대한 인식조사와 한국에 결혼 이주하여 정착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의 친정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함

- 한국-베트남 문화교류센터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베트남 주민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대상자 선정 및 의식조사 시행과 분석을 실시함
- 기존에 진행된 국제결혼 이주자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 전 결혼이주예정(희망)자 및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베트남 여성의 친정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등 조사 분석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I. 다문화 가족의 형성과 해체

1.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그 추이

가. 다문화가족의 형성추이

1) 전반적 경향

- 1991년 국제결혼은 5,102건으로 총 혼인 건수 416,872건 중 1.2%에 불과했으나 1995년 13,494건, 1996년 15,946건 등 90년대 중반 3% 이상으로 증가했음
- 특히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4년에 34,640건으로 총 혼인건수 중 10%를 넘어선 이후 2010년 현재 35,098건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음

〈표-1〉 혼인건수 및 구성비

(단위: 건, %)

	전체								
				출생한국인 간 혼인			다문화 혼인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혼인건수	327,715	309,759	326,104	291,086	275,897	291,006	36,629	33,862	35,098
(구성비)	(100.0)	(100.0)	(100.0)	(88.8)	(89.1)	(89.2)	(11.2)	(10.9)	(10.8)
전년대비 증감률		-5.5	5.3		-5.2	5.5		-7.6	3.7

〈표-2〉 혼인여성의 다문화 유형별 규모

(단위: 명)

	'08년	'09년	'10년
다문화	36,629	33,862	35,098
출생한국인	7,475	7,223	6,685
귀화한국인	991	1,497	2,139
외국인	28,163	25,142	26,274

2)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

-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4개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 외국여성과의 혼인 중 이들 4개국 출신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81%-85% 수준이던 것이 2003년 이후에는 더욱 증가하여 2010년에는 90%를 차지하고 있음
- 외국여성과의 혼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출신 여성과의 혼인은 2007년 이후 년도 별로 14,483명, 13,203명, 11,364명, 2010년 9,62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 － 베트남 출신 여성과의 혼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10,128건, 2007년

6,610건으로 전년대비 34.1% 감소했으나 2008년 8,282건으로 약 30% 증가한 이후 2009년 7,249건, 2010년 9,623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임

〈표-3〉 출신국적 구성비

(단위: %)

남성	'08년	'09년	'10년	여성	'08년	'09년	'10년
전체*	100.0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한국	76.4	73.5	74.6	한국	20.4	21.3	19.0
외국	23.6	26.5	25.4	외국	79.6	78.7	81.0
중국	7.3	10.1	9.1	중국	38.6	37.8	33.1
일본	7.5	7.2	6.0	베트남	22.6	21.4	27.6
미국	3.7	3.9	4.3	필리핀	5.1	4.9	5.6
캐나다	1.0	1.0	1.1	캄보디아	1.8	2.5	3.4
호주	0.4	0.5	0.6	일본	3.2	3.4	3.4
영국	0.4	0.5	0.5	태국	1.7	1.5	1.3
독일	0.3	0.3	0.4	미국	0.9	1.2	1.2
파키스탄	0.3	0.3	0.3	몽골	1.4	1.1	1.0
프랑스	0.2	0.3	0.3	우즈벡	1.3	1.1	0.9
대만	0.3	0.3	0.3	네팔	0.4	0.9	0.6
기타	2.0	2.2	2.4	기타	2.4	2.7	3.0

3) 첫 만남에서 결혼결정까지의 기간

-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한국생활에 대한 환상으로 배우자의 객관적 조건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결혼한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첫 만남에서 일주일 안에 결혼이 결정되는 등 단시간 내에 결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성격이나 생활태도 등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표-4〉 첫 만남에서 결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기간

기간	건수(비율)	기간	건수(비율)
1일	13 (9.0)	2주정도	7 (4.8)
2일	35 (24.1)	1달 정도	11 (7.6)
3일	28 (19.3)	2~3달	10 (6.9)
4~5일	11 (7.6)	4~5달	6 (4.1)
6~7일	9 (6.2)	반년이상	12 (8.3)

출처 :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0년

4) 국제결혼의 중개 통로

- 국제결혼 중개업 건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편과의 첫 만남방식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것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위의 결혼 결정에 이르는 기간이 일주일내의 비율이 66%에 이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음

〈표-5〉 남편과의 첫 만남 방식

만남 방식	건수(비율)	만남 방식	건수(비율)
결혼중개업체 소개	83 (57.6)	배우자 친지의 소개	4 (2.8)
본국 거주 내 친지의 소개	14 (9.7)	종교단체 소개	15 (10.4)
		내가 직접	5 (3.5)
한국 거주 내 친지의 소개	19 (13.2)	기 타	4 (2.8)

출처 :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0년

- 한편 2009년 실시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전국의 다문화 가족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남편과의 만남경로도 여성

결혼이주자의 경우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읍면지역(농촌)이 동(도시)지역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나. 국제결혼의 동기 및 목적

- 국제결혼 이주의 동기나 특별한 이유에 대한 선행 조사 사례는 사안의 민감성 등의 사유로 파악이 쉽지 않으며 국제결혼 중개업 건전화 방안 연구조사 보고서에서 140명의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제시한 가장 주된 결혼이주 이유는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위해’(29.7%)와 ‘현재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29.0%)이며 이 밖에 외국에 살고 싶어서 한국인과 혼인한 이유도 14.5%를 차지함

〈표-6〉 한국인과의 혼인 이유 : 사례수, (%)

내 용	사례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43 (29.7)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6 (4.1)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5 (3.4)
외국에 살고 싶어서	21 (14.5)
가족/친척의 권유	9 (6.2)
현재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	42 (29.0)
종교 때문	9 (6.2)
기 타	10 (6.9)

다. 종합 분석

- 2000년대 중반이후의 급격한 다문화 가족 증가의 주요인은 중국을 위시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 출신 여성들이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한

- 것이며 전체 혼인건수의 1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국가가 베트남이며 중국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 지역은 동지역(도시)이 읍, 면지역(농촌)보다 높으나 국제결혼 이주남성 대비 농촌지역의 비중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첫 만남에서 결혼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대부분 단기간 안에 결정(7일 이내 비율이 66%에 이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만남 비율이 높고 그들의 영리성 추구와 연관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음
 - 국제결혼 성사의 중개경로는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비율이 높으며 친척이나 주변의 소개에 의한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농촌지역 거주 국제결혼여성 이주자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중개에 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동기나 목적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이유(친정가족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나 취업)나 막연한 기대(한국이 좋아서, 외국에 살고 싶어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 결혼에 대한 자아 정체성 없이 최근의 한류 열풍에 기인한 막연한 한국에 대한 동경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탈피하고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 등 요인들이 작용해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단기간에 결혼을 결정해 버리는 현상을 유추해 볼 수 있음

라. 다문화가족 형성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1) 국제결혼 중개업체

- 국제결혼의 성사에 있어 현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는 국내 또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임

- 국가마다 결혼중개업체를 규율하는 법제나 시각이 다르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국제결혼의 성사단계 뿐만이 아닌 추후 중개업체의 귀착사유로 인한 혼인 파기 시에도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며 그 피해는 결혼 양 당사자가 짊어지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결혼 양 당사 국가의 국제적 공조강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2) 언어 및 사회 문화적 문제

- 언어문제는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으로써 결혼이주 당사자로서는 가장 큰 문제이며 의사소통이나 사회 문화적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이혼의 직, 간접적 사유가 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결혼 전 일정한 언어능력과 양 당사국의 사회 문화적 인식 차 해소를 위한 사전교육의 강화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은 실정임

3) 국내이주에 따른 체류 및 국적취득

- 국제결혼 당사자의 입장은 대다수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하여 살려고 온 절박한 입장임. 그에 따른 국적취득을 즉시 허용하는 문제를 법제상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사기나 위장결혼 등 불법적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일정기간 국내체류요건을 국적취득의 전제로 함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경우 국적취득을 취소하는 등 사후적 조치로 대다수 선량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2. 다문화가족의 해체

가. 해체추이 및 특성

1) 전반적 경향

-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2004년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2007년 7.0%, 2008년 10.7%로 10%대를 넘어선 이후 2008년~2010년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7〉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건, %)

	전체								
				출생한국인 간 이혼			다문화 이혼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이혼건수	116,535	123,999	116,858	104,105	110,346	102,539	12,430	13,653	14,319
(구성비)	(100.0)	(100.0)	(100.0)	(89.3)	(89.0)	(87.7)	(10.7)	(11.0)	(12.3)
전년대비 증감률	-	6.4	-5.8	-	6.0	-7.1	-	9.8	4.9

〈표-8〉 출신국적별 구성비

(단위: %)

남성	'08년	'09년	'10년	여성	'08년	'09년	'10년
전체*	100.0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한국	73.6	73.9	73.6	한국	24.7	23.7	21.9
외국	26.4	26.1	26.4	외국	75.3	76.3	78.1
일본	12.5	11.9	11.5	중국	54.5	55.3	53.6
중국	9.7	9.9	10.6	베트남	8.9	10.0	12.1
미국	1.9	1.9	1.9	필리핀	2.5	2.7	2.7
파키스탄	0.3	0.4	0.4	일본	1.7	1.7	1.8
캐나다	0.3	0.2	0.3	우즈벡	1.3	1.3	1.3
방글라데시	0.3	0.3	0.3	캄보디아	1.4	0.8	1.2
대만	0.3	0.3	0.2	몽골	1.7	1.3	1.2
베트남	0.0	0.1	0.1	태국	0.7	0.9	0.9
독일	0.1	0.1	0.1	미국	0.8	0.7	0.8
호주	0.2	0.1	0.1	러시아	0.6	0.5	0.7
기타	0.8	0.9	0.8	기타	1.2	1.2	1.9

2) 이혼 국제결혼 부부 아내와의 연령 차이

○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차이는 외국아내의 출신국가별로 상이함.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자국에서의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이 낮은 나라의 경우 연령 차이가 가장 크며, 세 국가 출신 여성과 남성의 연령 차이는 최근 3년간 15~20세로 나타나고 있음

— 베트남의 경우 2008년 18.1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출신 아내와 남편의 연령 차이는 2000년대 전반에 걸쳐 8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 기간

- 다문화 이혼의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4.7년으로 2008년 3.7년, 2009년 4.1년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한국인 남녀의 이혼시 평균 결혼생활기간인 14년 안팎에 비추어 볼 때 국제결혼 시 혼인지속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며 혼인지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내 이를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4)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종류

- 전반적으로 외국인아내의 재판 이혼비율이 70%에 이르며 외국인남편의 재판이혼 비율 35%로 두 배에 육박하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큼
- 다문화의 경우 대체적으로 재판에 의한 이혼비율은 55% 안팎으로 내국인 비율인 20% 안팎과 대비해 볼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원인을 파악 해 볼 필요가 있음
 - 언어 소통 및 문화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혼이주 후 국내체류 및 이혼 후의 국내 체류 문제나 국적취득 관련 우리나라의 법제와도 관련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9〉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구성비(다문화 중 여성)

(단위: %)

	전체			출생한국인 간 이혼			다문화 이혼			귀화한국인·외국인			출생한국인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협의	77.9	76.2	75.2	81.3	79.8	78.6	49.2	46.3	50.7	44.3	40.1	45.8	64.4	66.3	68.2
재판	22.1	23.8	24.8	18.7	20.2	21.4	50.8	53.7	49.3	55.7	59.9	54.2	35.6	33.7	31.8

나. 해체사유

1) 일반적 해체 사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본부, 지부)가 2008~2009년에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혼상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혼의 사유가 나타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이혼상담의 가장 흔한 사유는 각종 폭력을 비롯한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이며, 그 다음으로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배우자의 가출 등 악의적 유기가 주요한 이혼 상담 사유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갈등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주요한 이혼상담 사유로 꼽을 수 있음

2) 해체사유 특이점

-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을 신청한 경우와 여성결혼 이민자가 상담을 신청한 경우 이혼 사유가 서로 비교된다는 것임.
- 여성결혼이민자가 상담을 신청한 경우에는 폭력 등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지목한 사례가 50% 가량을 차지하여 가장 일반적인

사유로 꼽혔으며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폭력 등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 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월등히 많은데 비해

- 한국인 남성들은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토로 하며 이혼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현저히 많았음. 물론 여성결혼이민자들 역시 생활양식과 가치관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한국인 남편들의 경우 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함
- 서울가정법원 한숙희 부장판사의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 상대로 낸 이혼판결 100건을 분석한 대법원의 2008년도 자료에 따르면 입국 후 가출이 38건, 입국하지 않음이 21건, 입국 후 본국으로 되돌아간 경우가 14건등 전체의 75%를 점하고 있음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3) 결혼과정 및 국내체류상의 해체사유

가) 배우자에 대한 정보의 왜곡: 결혼중개업체의 사유

-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비 배우자의 신상과 관련해 매우 제한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결혼을 결정한 경우 원만한 결혼생활을 기대하기 힘든데, 국경을 넘은 결혼의 경우 정보 자체가 제한되기 쉬울 뿐 아니라 부정확하고 때로는 왜곡될 우려가 큼
 - 국제결혼의 경우 단기간 내에 제한된 조건에서의 만남만으로 결혼이 결정, 진행되어 관련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으로 상호간의 신상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결혼 성사후의 해체를 막는데 중요한 요소임.
-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한국생활에 대한 환상으로 배우자의 객관적 조건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결혼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로 나타나고 있음

- 배우자의 경제 사정, 결혼경험 및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정신적 장애, 범죄 경력 등에 대해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결혼한 이들은 그 자체로서 이혼을 결정하기도 하고 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어 각종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결혼의 수단화 의심에 따른 신뢰감 상실

-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뢰를 결여한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한 한국인 남편들 역시 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를 겪기 쉬우며 이러한 상태에서 부인이 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가정생활에 대해 극도로 무관심한 경우, 가정생활에 무관심하다가 가출한 경우 부인이 결혼과 가정생활보다는 취업 등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의심하기 쉽고 이처럼 상대에 대해 기본적 신뢰조차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체류자격을 둘러싼 갈등: 종속적 관계

- 체류자격이 한국인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성결혼이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가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압류하거나 체류자격 연장이나 국적 취득에 협조하지 않는 등 체류자격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결혼이민자의인신을 통제 하려 시도하는데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제결혼 배우자의 국내체류와 국적취득 절차상 우리나라 관련법규의 재검토를 요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음.

라) 경제적 갈등

- 폭력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혼의 주요 사유로 지적하는 요인은 경제적 갈등 문제임
 -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심각한 수준의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쉬우며 부인을 신뢰하지 않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생계와 자녀양육, 친정 지원 등을 위해 여성 자신이 취업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수입을 활용하지 못한 채 남편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경우 경제적 갈등구조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마)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양식의 차이 등

-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배우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차이가 가족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많은 경우 차이가 적절히 조정되지 못한 채 갈등적 상황으로 번지기 쉬움
-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결혼이민자들보다 한국인 남편들에게 있어 이러한 점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는 것임. 다문화 가족의 특성상 문화적 차이가 가족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쉽게 국제결혼을 결정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종합 분석

1) 해체추이 및 특성

- 2000년대 중반이후 국제결혼의 해체(이혼 등)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결혼 이주의 증가현상과 맞물려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의 다문화가족 해체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체된 이주여성과 한국 배우자 간의 평균 동거기간은 4년 안팎으로 한국인과의 평균 동거기간인 14년 안팎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간의 나이차이도 중국의 경우 8년 정도이나 조혼경향이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과의 나이차는 18년 정도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이혼의 형식도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합의에 의한 이혼보다 재판에 의한 이혼비율이 70%에 이르러 외국인 남편의 재판이혼비율 35%인 내국인 간의 재판에 의한 비율 20%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체류자격의 유지를 위한 이혼의 귀책사유 입증을 위한 방편으로써 재판을 선택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재판 수행 과정에서 모든 여건이 불리한 결혼이주여성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됨을 알 수 있음

2) 해체사유

가) 일반적 해체사유

- 이혼상담에서 드러난 결혼이주 여성의 이혼사유로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 시집의 부당한 대우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갈등,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인 점에 비해 한국인 남편의 경우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가 주요 이혼상담 사유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이주 여성의 악의적 가출 등 사기결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음

나) 결혼과정 및 결혼 생활 중 해체사유

- 신뢰형성상의 문제 :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신상정보
 - 결혼성사를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속성상 결혼 양 당사자의 신상이나 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심지어는 거짓정보로 우선

결혼을 성사 시키고 보자는 경향이 강함

- 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성사의 경우 그 기간이 대부분 10일 안에 이루어진다는 설문 결과를 보면 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은 상당수가 시작부터 해체의 요인을 안고 시작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큼

○ 체류 자격 문제

- 다양한 국제결혼 부부간 갈등구조로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국내법의 규정은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갈등에 의한 해체사유가 될 수 있음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문제가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종속될 여지가 있는 현행 법제는 동등한 인격체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본질에 반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재검토를 요하는 사안임

○ 경제적 문제

- 한국으로의 결혼 이주한 여성의 경우 경제적인 기대수준이 높으며 친정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결혼과정에서의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력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결혼생활 과정에서 체감하는 현실과의 괴리, 친정가족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둘러싼 문제로 상호 신뢰가 깨지며 이는 혼인 해체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음

○ 언어 및 문화의 문제

- 의사소통 및 생활 방식의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은 한국인 남편의 주요 이혼사유가 됨을 볼 수 있음.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예상하고 어느 정도 준비하며 감내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인 남편의 경우 국제결혼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러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

게 생각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며 결혼 생활 중에 이에 대한 갈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됨

-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이르는 다양한 원인을 사례 중심으로 조사한 바
 - 일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결혼, 특히나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다양한 변수들은 혼인생활의 지속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쳐 최악의 경우 이혼에 까지 이르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 내국인끼리의 이혼도 상당한 후유증을 수반 하는데 국제결혼은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간의 복잡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많은 심각한 사안임에 따라 국제결혼의 해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사후적 가능한 조치를 적극 모색 하여야만 할 당위성은 크다 할 것임
- 배우자에 대한 신뢰 문제, 결혼 동기의 문제, 문화와 사회관습의 문제, 경제적 문제가 주요 이슈이며 이는 결국 결혼중개업체등 결혼 중개기관의 정보제공 문제와 신빙성확보, 결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사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결혼 전 충분한 교육 등 가시적인 법적, 제도적 치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III. 베트남의 국제결혼 이주에 대한 의식조사

1. 조사 대상 및 방법

가. 조사 대상

- 최근 결혼이주 여성 출신국 중 상대적으로 혼인 및 이혼율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베트남의 150명(기 이주여성의 친. 인척 등 가족 30명, 결혼

이주 예정(희망)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나. 설문조사 방법

- 결혼이주 예정(희망) 여성 120명에 대한 조사는 설문지로, 기 이주 국제결혼여성의 친정가족 30명에 대한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조사함

2. 조사결과 평가

가. 한국 및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 한국에 대한 인지여부는 희망여성의 경우 대부분(90%) 알고 있으며 좋게 생각하고 있으나 부정적 인식도 20%에 이룸. 한국어 능력도 90%정도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을 나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짐
 - 기 결혼이주 친정가족의 경우 한국인지 여부는 절반가량 이며 부정적 인식도 희망여성의 경우와 비슷한 23% 수준임.
 - 대중매체나 친구 및 한국문화가 호. 불호에 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은 긍정 내지는 중립적 입장과 부정적, 잘 모름이 반반으로 나타남
 - 국제결혼정보에 대해 대부분 들은 적이 있으며 정보원은 한국문화교실과 대중매체를 통해서임

나.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해서

- 결혼중개업체에 대해 약 절반가량이 알고 있으며 그들의 불법성 인식은 안다가 희망여성의 경우 32%, 친정가족의 경우 17%에 그친 반면 불법이 아니다, 모른다가 각각 56%, 70%에 이르러 불법성 인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다. 사전교육 여부

- 희망여성의 40%, 기 이주 결혼여성의 20%만이 국제결혼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라. 결혼이주에 대한 의식

1) 희망여성의 경우

- 결혼이주에 대한 태도
 - 하고 싶다(18%) 보다는 조건이 맞으면 한다(68%)가 많아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임
- 국제결혼의 동기나 목적
 -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한국에 대한 동경(한국이 좋아서 52%, 한국 남성이 좋아서 13%)이 대부분이었으며 친정가족 부양은 2%에 그침
 - 반면, 국제결혼 후 친정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비율이 72%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 후 하고 싶은 것 중 친정부양의 비율도 11%로 나타나고 있음
 - 결혼 후 경제활동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절반을 넘어선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침
- 예상되는 어려움
 - 언어문제(51%)와 생활습관(30%)를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생활에 장애요소로는 남편과 부부관계(55%), 시집식구(10%)로 대부분 인간관계에 대한 요인을 꼽고 있으며 남편의 경우 구타에 대한 우려가 64%로 나타남

2) 친정가족의 경우

○ 결혼허락 동기

- 자녀의 행복과 자녀의 결정에 따름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나 자녀로 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식은 지원을 원하거나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은 40%로 받은 적 없다(57%)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어려움 요인

- 친정가족들도 자녀의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요인을 언어(63%)와 문화(27%)를 꼽았으며 자녀로 부터의 어려움을 호소함을 들은 적이 있음의 비율이 37%에 달하고 있음

3. 시사점 및 개선방안

○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의 동기나 목적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설문조사로 명확한 내용을 추출하기엔 한계가 있음

- 본 조사에서도 동기나 목적이 한국이 좋아서와 같이 추상적이며 자녀의 행복이나 자녀의 결정과 같이 일반적인 응답이었음.
- 반면 실질적으로 한국으로의 결혼이주 후 하고 싶은 일이나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여부,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 등을 보면 경제적인 측면의 다양한 욕구나 동기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경제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언어 및 직업교육 확충

- 취업 등 한국사회의 적응과 친정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언어와 취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촌의 경우 전문 영농인

- 육성 프로그램에 이주여성이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국제결혼에 따른 사전 교육이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음
 - 언어문제와 생활양식등 문화적 측면이 국제결혼이주에 가장 큰 걱정거리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에 비추어 언어나 문화적 생활방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전, 사후적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과제를 보여 주고 있음
- 가족관계 갈등완화 프로그램 시행
 - 남편의 폭력이나 시집과의 갈등이 이주희망 여성이나 친정가족들이 걱정하는 이슈 이므로 바람직한 부부 및 가족관계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캠프 프활동 등을 개발하여 적극 시행함이 필요함

IV. 결 론

- 본 조사의 목적은 국내 다문화 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 보고 한국으로 결혼 희망(예정)인 베트남 출신 여성 및 친정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결혼이주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여 상호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음
- 국내 선행연구 조사를 보면 다문화가족의 형성 동기는 친정가족 부양이나 취업과 같이 경제적인 목적(33.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에 이르는 중개통로로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평균 동거기간 4년 만에 약 30%정도가 해체하게 되며 이혼한 결혼이주 여성은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등 이들을 치유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해체사유로는 내국인의 경우와는 다른 국제결혼의 특수성상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나 이는 대체적으로 가족갈등 등 부부간 상호신뢰의 문제가 근저에 깔려 있음을 이혼상담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음
- 한편, 베트남 현지에서의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의식조사를 보면 동기나 목적에 있어 막연한 한국에의 동경이 주를 이루나 근저에는 친정가족 부양이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기대 등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으며 국제결혼이주에 따른 예상되는 어려운 점으로 언어와 생활습관의 차이를 들고 있으며 남편에 의한 구타문제를 걱정함
- 따라서 결혼해체를 줄이는 정책과제는 이들이 기대하고 있고 걱정하는 경제적 활동, 부부 및 가족과의 원만한 유대관계, 언어 및 사회 문화적 상호이해 등의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발굴 시행하는 것임
- 이와 함께 결혼형성 시 중개비용이 큰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확한 쌍방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배상을 강화하여 결혼형성단계에서 개제될 수 있는 거짓, 외국 된 정보에 의한 결혼 후 상호신뢰를 깰 수 있는 소지를 줄이는 법적, 제도적 노력과 결혼이주당사국과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국제협력 강화가 정책적으로 추진 될 필요성이 있음



총
합
포
문

다문화가족의 현실진단

발 행 2011년 11월 30일

발행인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인 쇄 종려나무(042-255-0309)